

2021년도 복지 및 인권옴부즈만 운영보고서

<http://www.daegu.go.kr/Ombudsman>



CONTENTS



발간사	4
-----------	---

CHAPTER

01

대구광역시 복지 및 인권옴부즈만 소개

1. 대구광역시 복지 및 인권옴부즈만 연혁	8
2. 대구광역시 복지 및 인권옴부즈만 운영 현황	9

CHAPTER

02

복지 분야 고충민원 현황 및 처리 결과

1. 고충민원 현황 및 처리 결과 요약	14
가. 고충민원 현황	14
나. 고충민원 처리 결과 요약	16
2. 고충민원 사례 및 처리 결과	18
가. 수용 민원 사례	18
나. 안내 및 대안제시 민원 사례	19
다. 조사 중 해결 민원 사례	30



CHAPTER

03

인권 분야 고충민원 현황 및 처리 결과

1. 고충민원 현황 및 처리 결과 요약	34
가. 고충민원 현황	34
나. 고충민원 처리 결과 요약	34
2. 고충민원 사례 및 처리 결과	35

CHAPTER

04

복지 및 인권 옴부즈만 활동 현황 및 자문위원

1. 복지옴부즈만 활동사진	38
2. 인권옴부즈만 활동사진	40
3. 복지 및 인권옴부즈만 홍보 현황	41
4. 복지 및 인권옴부즈만 자문위원	45

CHAPTER

05

부 록

1. 지방자치단체 옴부즈만 현황	48
2. 대구광역시 복지 및 인권옴부즈만 설치 · 운영에 관한 조례	51
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59
4. 국가인권위원회법	96
5. 고충민원신청서 서식	118

발 간 사

2021년도는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19와의 싸움에 모두가 힘들었지만 동시에 일상 회복이라는 한 줌의 희망을 볼 수 있었던 한 해였습니다.

대구광역시 복지 및 인권 옴부즈만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행정의 불합리한 제도나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소외된 계층의 고충에 대해 역지사지의 마음가짐을 가지고 시민의 입장에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지속적인 코로나19로 인해 인터넷 및 전화로 민원을 접수하여 상담하였으나 하반기에는 일상 회복 단계가 진행됨에 따라 홍보활동 및 사회복지시설 방문 등 외부 활동을 다시 시작하였습니다.

2021년 한 해 동안 접수된 민원의 내용은 작년 대비 코로나19 관련 민원은 줄어들었고 복지 분야는 장애, 기초수급 관련 민원이 접수되었으며, 인권 분야에서는 사회복지시설에 거주 중인 분들의 인권과 관련된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복지옴부즈만은 문제에 대해 직접적인 의견표명 및 권고를 하거나 관련 부서에서 처리가 가능한 것은 민원인에게 안내를 통해 문제 해결에 앞장섰고 인권옴부즈만은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입소자들과 직접 상담 및 각 단체 및 공공기관의 인권 관련 자문을 통해 시민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한 2022년도에도 복지 및 인권옴부즈만은 접수된 민원을 처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관심 및 홍보를 통해 생소하고 어려운 옴부즈만이 아닌 친숙하고 시민들의 생활 속에 옴부즈만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공정한 행정을 최우선으로 두고 시민과의 적극적인 소통 및 공감을 통해 작은 고충도 귀 기울여 행정기관과 시민의 사이를 잇는 가교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운영보고서에 2021년 대구광역시 복지 및 인권옴부즈만의 운영 성과와 민원 처리결과 등을 담아 대구광역시와 대구광역시의회에 보고하고, 대구시민에게 알리고자 합니다.

아울러 2년째 코로나19 일선에서 늘 고생하시고 노력하시는 의료진과 대구시민들의 행복 복지 실현을 위해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하고 계시는 사회복지사 및 유관기관 종사자 분들 그리고 항상 옴부즈만의 원활한 민원해결을 위해 지혜를 모아주시는 복지 및 인권옴부즈만 자문위원님들, 옴부즈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각종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는 대구광역시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1년 12월

대구광역시 복지옴부즈만 **방 성 수**

대구광역시 인권옴부즈만 **박 무 닌**

어려움을
함께하는 따뜻한
복지·인권 대구 구현





CHAPTER

01

대구광역시 복지 및 인권옴부즈만 소개

1. 대구광역시 복지 및 인권옴부즈만 연혁
2. 대구광역시 복지 및 인권옴부즈만 운영 현황

01

대구광역시 복지 및 인권옴부즈만 연혁

- 2006. 12. 6. 민선4기 시장공약사항 확정
- 2008. 12. 1. 「대구광역시복지옴부즈만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제정
- 2009. 3. 10. 제1대 복지옴부즈만(김현익) 임용
- 2009. 6. 8. 제1기 복지옴부즈만 자문위원회 구성 (위원 7명)
- 2011. 5. 2. 제2대 복지옴부즈만(정정화) 임용
- 2011. 5. 30. 「대구광역시 복지옴부즈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 2011. 6. 21. 제2기 복지옴부즈만 자문위원회 구성 (위원 9명)
- 2012. 5. 10. 「대구광역시 복지옴부즈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 2013. 5. 2. 제3대 복지옴부즈만(정정화) 재임용
- 2013. 6. 21. 제3기 복지옴부즈만 자문위원회 구성(위원 9명)
- 2015. 5. 11. 제4대 복지옴부즈만(변창식) 임용
- 2015. 6. 21. 제4기 복지옴부즈만 자문위원회 구성(위원 9명)
- 2017. 5. 10. 「대구광역시 복지 및 인권옴부즈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 2017. 5. 11. 제5대 복지옴부즈만(변창식) 재임용
- 2017. 6. 21. 제5기 복지옴부즈만 자문위원회 구성(위원 9명)
- 2017. 9. 11. 제1대 인권옴부즈만(이명주) 임용
- 2018. 1. 24. 제1기 인권옴부즈만 자문위원회 구성(위원 9명)
- 2019. 5. 21. 제6대 복지옴부즈만(방성수) 임용
- 2019. 6. 21. 제6기 복지옴부즈만 자문위원회 구성(위원 9명)
- 2019. 9. 11. 제2대 인권옴부즈만(이명주) 재임용
- 2020. 1. 24. 제2기 인권옴부즈만 자문위원회 구성(위원 9명)
- 2021. 5. 21. 제7대 복지옴부즈만(방성수) 재임용
- 2021. 6. 21. 제7기 복지옴부즈만 자문위원회 구성(위원 9명)
- 2021. 10. 1. 제3대 인권옴부즈만(박무늬) 임용

02

대구광역시 복지 및 인권옴부즈만 운영 현황

가. 도입배경

1994년 중앙정부에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발족하고 이에 따른 옴부즈만 기능일부가 도입됨에 따라 대구시는 이 제도를 복지영역에 특화를 하여 2009년 4월, 전국 최초로 복지옴부즈만 제도를 도입·실시하게 되었다.

복지옴부즈만은 대구시가 실시하는 복지행정에 대하여 시민에 의한 행정 감시를 하는 것으로, 이 제도를 통하여 복지행정에 관한 고충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며, 복지현장의 부정·비리를 근절하여 건전한 지역복지환경을 구축하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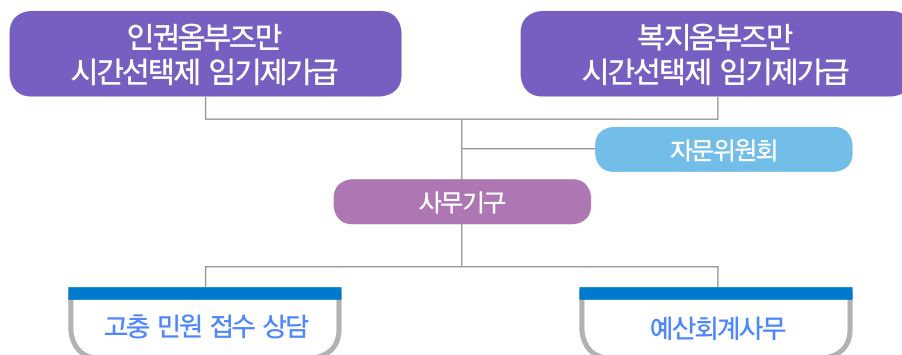
인권옴부즈만은 2017년 시립희망원 혁신대책의 일환으로 희망원 및 사회복지시설 생활인의 인권 보호와 인권증진을 위한 인권분야 옴부즈만을 설치 운영하게 되었다.

설치 및 운영 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대구광역시 복지 및 인권옴부즈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나. 형태 및 조직

대구시 복지 및 인권옴부즈만은 행정부형으로, 의결방식은 독임제이며, 자문위원회를 통해 주요 사안에 대한 자문을 받게 된다. 업무는 복지 및 복지시설 생활인 인권영역에 특화함으로써 행정부형 독임제 특수옴부즈만 형태를 취하고 있다. 조직은 복지 및 인권옴부즈만 각 1명, 자문위원 9명(위원장 포함) 행정지원팀 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 직무범위

대구시 복지 및 인권옴부즈만의 직무범위는, ①행정기관(민간위탁기관, 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 받는 법인, 단체 및 개인)이나 개인이 수행한 복지 및 인권 분야 행위에 대하여 제기된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 및 처리, ②복지 및 인권 분야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과 그 내용의 공표, ③복지 및 인권 분야 행정제도 및 제도운영상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과 그 내용의 공표, ④스스로의 발의에 의한 복지 및 인권분야 사안의 채택 조사, ⑤복지 및 인권 분야의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에 대한 조정·중재, ⑥복지 및 인권 분야 집단민원의 조정·중재, ⑦그 밖에 복지 및 인권 분야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 상담 및 민원처리 지원 등이다.

라. 관할기관

복지 및 인권옴부즈만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관할기관은, ①시 및 그 소속행정기관, ②자치구·군(시의 위임사무에 한한다), ③시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공기업 및 출연기관, ④시의 민간위탁기관(시의 위탁사무에 한한다), ⑤「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또는 「지방재정법」에 의하여 시로부터 복지 분야 보조금을 지원받는 법인이나 단체 및 개인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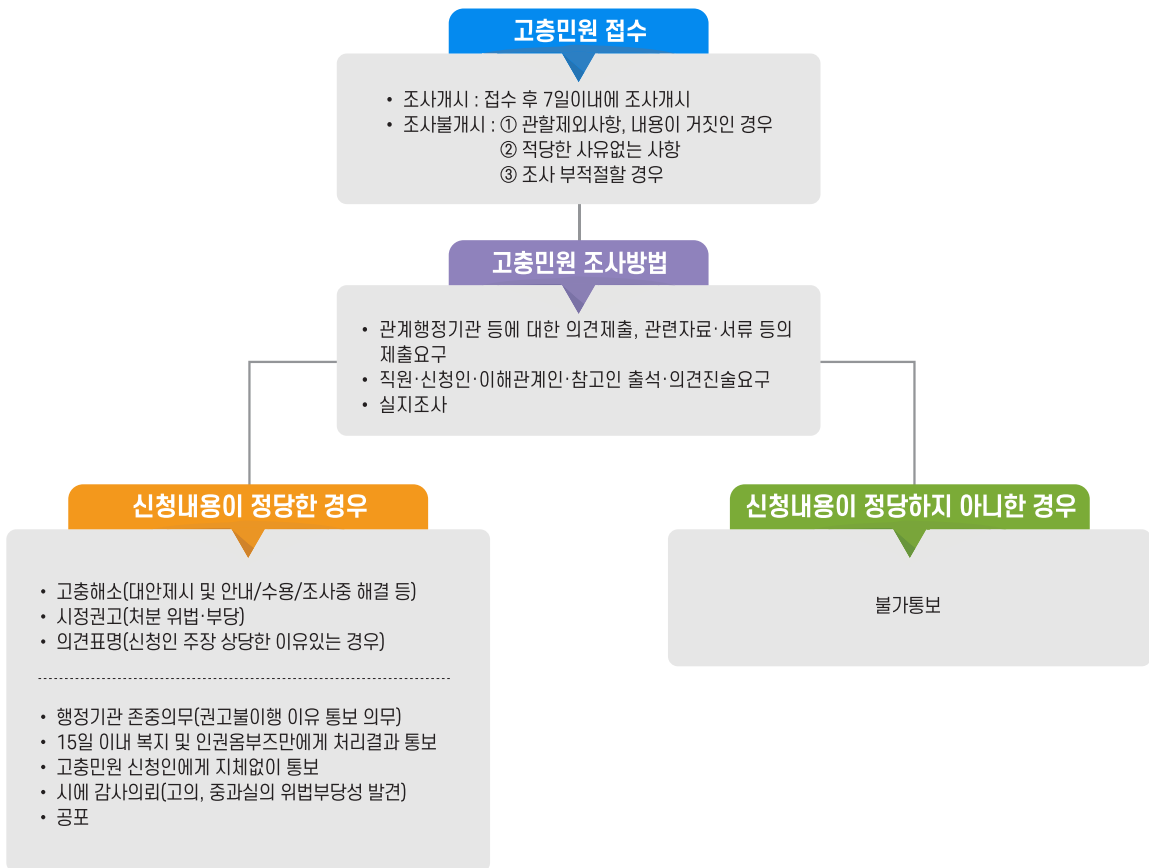
마.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

고충민원은 본인이나 대리인이 서면, 우편, 인터넷, 전화, 팩스 등으로 신청가능하고, 접수된 민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7일 이내에 조사를 개시하여야 한다. 조사를 위해 관계행정기관에 의견제출, 관련자료, 서류 등 제출요구 및 관계행정기관의 직원, 신청인, 이해관계인, 참고인등의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을 요구 할 수 있다. 또한 조사사항과 관계있는 장소, 시설 등에 대한 실지조사도 하게 된다.

조사결과 처분 등이 위법, 부당한 경우에는 시정권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제도개선 등의 의견표명을 하게 되는데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받은 행정기관은 15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특히 행정기관 등의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법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시에 감사를 의뢰하게 된다.

고충민원 처리유형

처리유형	내 용
시정권고	처분 등이 위법·부당한 경우
의견표명	신청인의 주장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도개선 및 의견표명	법령, 제도,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합의의 권고	공정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을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 권고
조정	다수인이 관련되거나 파급효과가 큰 민원의 경우 신속·공정한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정에 의해 조정서 작성
각하 또는 이송	판결 등에 권리 관계가 확정되거나 사안간의 권리관계에 속하는 사항



어려움을
함께하는 따뜻한
복지·인권 대구 구현





CHAPTER

02

복지 분야 고충민원 현황 및 처리 결과

1. 고충민원 현황 및 처리 결과 요약
 - 가. 고충민원 현황
 - 나. 고충민원 처리 결과 요약
2. 고충민원 사례 및 처리 결과
 - 가. 수용 민원 사례
 - 나. 안내 및 대안제시 민원 사례
 - 다. 조사 중 해결 민원 사례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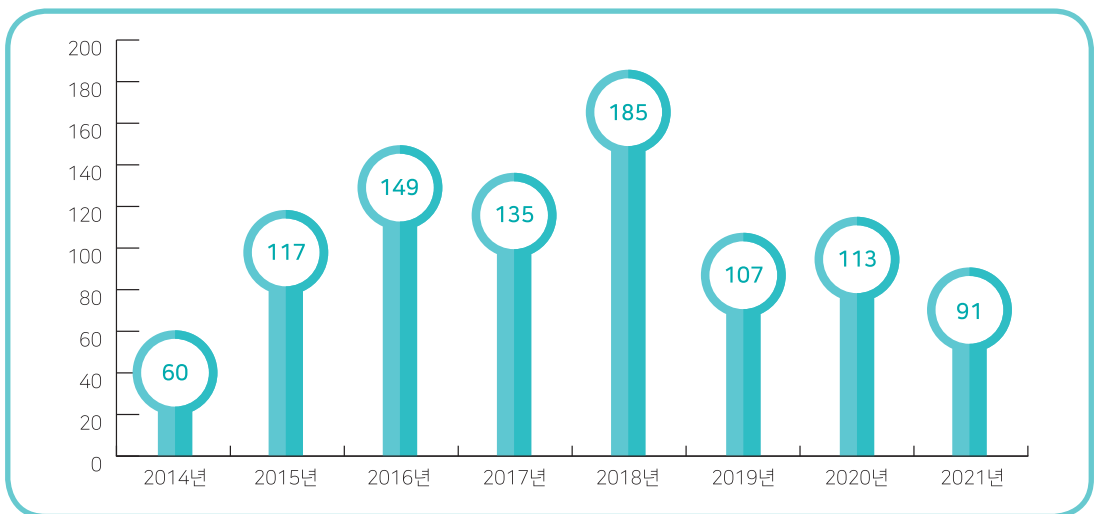
고충민원 현황 및 처리 결과 요약

가. 고충민원 현황

1) 연도별 현황

구분	접수 건수	조 사 결 과 처 리 현 황												
		복지 분야								타 분야				
		소계	수용	대안 제시 및 안내	불가	조사중 해결	조사 (처리) 진행중	권고 의견표명 수용	권고 의견표명 불가	소계	수용 및 안내	불가	조사중 해결	조사 (처리) 진행중
2021	91	7	1	6	-	-	-	-	-	84	79	-	5	-
2020	113	68	2	60	-	6	-	-	-	45	44	-	1	-
2019	107	32	5	25	1	1	-	-	-	75	74	1	-	-
2018	185	56	9	41	2	3	-	1	-	129	119	4	5	1
2017	135	52	11	36	1	3	-	1	-	83	77	6	-	-
2016	149	48	17	23	7	1	-	-	-	101	90	9	2	-
2015	117	49	17	26	6	-	-	-	-	68	61	7	-	-
2014	60	53	11	22	13	1	-	4	2	7	7	-	-	-
2013	71	46	10	21	10	1	-	4	-	25	25	-	-	-
2012	47	47	6	21	10	5	-	3	2	-	-	-	-	-
2011	37	37	4	14	9	7	-	2	1	-	-	-	-	-
2010	44	44	3	13	11	12	-	3	2	-	-	-	-	-

연도별 접수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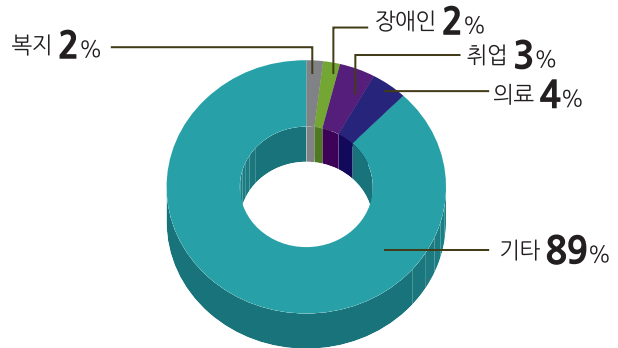


2) 고충민원 분야별 분석

대구시 복지옴부즈만이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접수한 민원은 총 91건으로 이 중에 복지 분야는 7건이고, 타 분야는 84건으로 모두 종결 처리가 되었습니다.

(1) 고충민원 접수 현황 및 처리 결과

복지 분야 및 타 분야로 접수된 고충민원 91건의 내용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복지혜택 2건 2%로 가장 많았고, 장애인 관련 2건 2%, 취업 3건 3%, 의료 4건 4%, 기타 80건 89%



고충민원 분야별 접수현황

분류	복지혜택	장애인	취업	의료	기타	계
건수	2	2	3	4	80	91
비율(%)	2	2	3	4	89	100

고충민원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면 민원인의 고충민원을 전적으로 수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일부수용과 함께 적극적인 고충해결의 일환으로 대안제시 및 안내를 한 고충민원이 85건 93%, 수용 처리한 고충민원이 1건 1%, 조사 중 해결이 5건 6%이었습니다.

복지 분야 고충민원 분야별 처리 결과

분류	수용	불가	대안제시 및 안내	조사 중 해결	계
건수	1	0	85	5	91
비율(%)	1	0	93	6	100

나. 고충민원 처리 결과 요약

복지 관련 및 타 분야

신청취지	처리결과
장애인주차장 이용	수용
장인께서 기초수급에 해당이 되시는지 궁금합니다.	안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한국요리수업 식자재 키트를 못받았습니다.	안내
다문화관련 문의합니다.	안내
부모님 조기치매 치료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내
도대체 법이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지는가 화가납니다.	안내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의 지연신고 조사요청	안내
주거급여에 관련하여	안내
구청에서의 선택이 저의 인생에서의 앞으로 살 수 있는 길이 좌우되고 있습니다.	안내
진명 푸드뱅크 이용자입니다. 빵이 고르게 배분되고 있는지 지도 점검해주세요.	안내
공공근로 일자리 관련 문의합니다.	안내
7월 돌봄인력 백신접종대상자 늘려주세요.	안내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 자격기준	안내
공공근로 신청 탈락되었습니다.	안내
컬러풀 드림카드 IC칩, 디자인 교체 발급요청	안내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부당해고 근로자 원직 복직 촉구합니다.	취하
여성숙직제? 세금 낭비하는 행정	취하
불법 구조물 철거 요망	안내
4호선 순환선을 서대구역 연결선으로 확정하기 촉구합니다.	안내
트램은 와룡로로 가야합니다.	안내

신청취지	처리결과
불친절 의견 제시에 민원을 넣으라고 말하는 공무원	안내
타지역에 설치된 대구와 관련된 내용 꼭 시정요청드립니다.	안내
노후차량 매연저감장치 부착 기준설정 관련 이의 있습니다.	안내
구지주민들의 인권을 지켜주세요.	안내
불법투기 단속지원 민원신고	안내
서대구로 트램 노선 확정 간절합니다.	안내
아이스팩 재활용사업 항목 추가 제안	안내
행복뎃발 아카데미 신청	안내
대구의료원 코로나 격리관리 문제점	안내
수성구청 대구시청 건축 친절관련 업무자들 답변바랍니다.	안내
서대구로 서대구역연결트램, 대구시는 시민분열을 즐기는가?	안내
국정원으로부터 민간인 불법사찰을 받고 있습니다.	안내
통장압류 해지 관련 연락처 문의	안내
잠을 잘수도 없고, 시끄러워서 너무 괴롭습니다.	안내
국민세금으로 진행한 달서구 공모전 비리 의혹을 고발합니다.	안내
대구실내체육관내 체육시설 개방문의	안내
대구 아외음악당 주차요원관리	취하
미분양 불법 광고 현수막 단속	안내
건설사 소장 갑질	안내

02

고충민원 사례 및 처리 결과

가. 수용(일부수용) 민원 사례

장애인 주차장 이용

➡ **고충요지** : 저는 시각6급 장애인입니다. 왼쪽 눈은 거의 실명 상태이고 오른쪽 눈은 교정 시력이 1.0 정도입니다. 다행히 운전을 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어 운전을 하고 있는데, 주차할 때가 너무 힘듭니다. 양옆의 거리가 정확하게 잘 보이지 않아 어두운 지하주차장이거나 주차폭이 좁은 곳에 주차할 때 걸핏하면 옆차의 백미러를 파손하고 기둥을 박아 본인 차를 훼손하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장애인 주차장은 많이 비어있는데 이런 고충을 배려해 주셔서, 시각 장애인도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처리결과**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능한 장애인자동차 표지는 장애인 본인의 자동차일 경우 장애등급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09호, 21.4.3)의 「장애유형별 보행상 장애표준기준표」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보행상 장애 미 해당자 중 중복장애인의 경우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점수표에 따라 주차가능표지를 발급합니다. 주차가능표지 발급 가능여부에 대해 정확한 사항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시면 보다 더 자세히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나. 안내 및 대안제시 민원 사례

장인께서 기초수급에 해당이 되시는지 궁금합니다.

➔ **고충요지** : 장인께서는 60년생이며, 장모(63년생)님과 약 20여년전 이혼을 하셨습니다. 장인께서는 경비일을 하시다가, 20년 6월쯤 정신질환으로 현재 정신병원 입원상태입니다. 현재 병원비는 매달 80여만원 소비가 되는 상태입니다. 장인에게 자녀는 와이프와 처남, 2자녀가 가족관계상 등록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혼시점 이후 자식들을 장모께서 부양 하는데 장인께서 기초수급 또는 행정적 지원으로 병원비 부담을 덜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처리결과** :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경우 기초생활보장제도, 긴급복지지원제도 등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인 자'로 근로능력유무, 소득·재산, 부양의무자 조사 등을 통해 수급자를 선정하며 조사 결과에 따라 생계·의료·주거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근로능력이 있는 생계급여수급자에 대하여는 자활사업 참여 조건부과 및 유예를 결정하여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도 있음)

조사·결정은 신청일로부터 최대 60일이 소요되므로 현재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긴급복지지원제도 상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한국요리수업 식자재 키트를 못받았습니다.

➡ **고충요지** : 집사람이 00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문화강좌 프로그램에 나가고 있음. 케이팍과 한국요리를 배우고 있는데, 요리 수업의 경우 수강생들에게 집에서 요리를 할 수 있는 식자재 키트를 나누어 주고 있는데 집사람이 받지 못했음. 다른 수강생들은 주는데 유독 집사람만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남은 식자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싶음.

➡ **처리결과** : 21.4.19. 2시경 00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방문하여 담당 직원과 면담하였습니다. 해당 수업은 연 2기, 2주에 한 번 진행하는 수업으로 현재 1기 2회차까지 수업이 진행되었으며, 배우자분이 한국요리 수업 수강생임을 확인하였고 2회 모두 식자재 키트를 수령했다는 서명 및 요리 과정과 결과물 인증 사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수업의 경우 인기가 많은 수업이라 정해진 인원만 신청이 가능하며 식자재 키트 또한 모든 수강생이 수령하고 있고, 정해진 시간에 수령하지 못한 경우 3일 정도 냉장고에 보관하며 그 기간 안에는 모두 수령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은 식자재는 없으며 혹여나 남는다고 하더라도 수강생분들에게 더 드리고 있습니다.

다문화관련 문의합니다.

➡ **고충요지** : 국적 너무 까다롭네요. 3명의 애들보고 살아간지 10년이고 사는데 지장없는데, 면접보는데 들어가는 돈 구하기도 힘들고 애들도 외국인 엄마 부끄러워하고 한국에 살지말고 외국으로 가라는 소리지 무슨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가정형편도 어려운데 대한민국 사랑하면 되지 뭐가 문제인지 면접 이렇게 어려우면 돈 없고 힘 없으면 외국가라는 소리입니까? 시정 좀 해주세요. 애들과 행복하게 살수있게 해 주십시오.

➡ **처리결과** : 민원을 신청하신 분과 전화 통화를 통해 상담을 진행하였고, 현재 어려운 상황을 조금이라도 해결할 수 있도록 여러 방법(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 방문 등)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부모님 조기치매 치료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 **고충요지** : 초기치매로 팔손이신 엄마가 치료가 시급한데 늘 붙어서있기가 힘들어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하고자 알아보던 중 보건소 치매센터를 알게되어 감사한데 매번 모시고 가기가 힘든 사정이라 치매어르신을 위한 운송수단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약간의 개인 부담을 하더라도 안심하고 보내드록 싶습니다. 어디다 제안 드려야할지 몰라 이렇게 적습니다. 직장생활하면서 시간내는게 어렵습니다.

➔ **처리결과** : 귀하께서 신청해주신 민원의 요지는 치매 어르신을 위한 운송 수단 마련 건으로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00구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 어르신을 대상으로 인지 재활 프로그램, 쉼터운영 등을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송영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지 않아 어르신의 이동에 불편하게 한 점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유선상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경증 치매 어르신을 대상으로 보호, 인지 재활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는 기억학교는 송영 서비스가 가능한 점 안내해 드리며, 추후 00구 치매안심센터에서도 내부적 검토 등을 통해 송영 서비스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대체 법 이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지는가 화가납니다.

➔ **고충요지** : 저는 00구에 사는 32살, 4명의 자녀를 둔 아버지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정말 답답하고 화가나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도대체 법이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지는가 화가 나더라고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제가 사업을 하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가게 사정이 안 좋아져서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 혹은 지자체 도움이 있을까해서 찾아봤는데, 지원이 다 안된다고 하네요. 재산이 잡혀서 안된답니다. 당장 버는게 없는데 그 재산 때문에 굶어야되는데 나라에서 그렇게 하는게 맞나요? 그리고 출산 많이하면 지원 많이 해준다고 하지만, 지자체마다 다르고 화가납니다. 애 많이 낳으라해서 낳았는데, 나라에서 도움이 필요할때는 재산 때문에 안된다고 나몰라 하고 너무 답답하네요. 제가 하루에 일용직 포함 12시 간헐게 일하고 집사람도 12시간 넘게 같이 일합니다. 심지어 집사람은 오른팔이 다쳐서 제대로 생활도 힘듭니다. 이렇게 해도 한달생활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원받을 방법을 동사무소가서 물어보니 재산때문에 안된다 그러고 구청가서 물어보니 재산 때문에 안된다고 하네요. 그 재산이 생계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땅에서 나오는 작물들은 동네분들에게 부모님께서 판매하시고, 차량은 택배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게 너무 힘듭니다. 몇가지 말씀드리자면 근로장려금 신청하려고 하니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를 물어보니 부모님 집에 살아서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말이 됩니까? 집 살 돈이 없는데? 그래서 부모님 도움받는데 근로장려금 안된다고요? 그리고 최근에 고용노동부에서 폐업한 사람들 지원해준다해서 서류제출하고 통과 되서 교육 들으러 갔는데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한달에 수입이 53만원 넘으면 안된다고요. 52만원까지 됩니다. 지원을 6개월동안 매달 50만원씩 해주는데, 그럼 52만원만 벌고 50만원 받아서 6명 식구가 102만원으로 생활해야 합니다. 가능한가요?

➔ **처리결과** : 귀하의 민원내용은 재산초과로 인한 코로나19 피해지원의 어려움과 그에 따른 해결방안에 대해 문의 주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우선 대구시에서는 생계가 어려운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 및 차상위 지원, 긴급복지지원 등 법정 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각종 재난지원금 사업을 통해 코로나19 피해 가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의 취지와 성격상 소득, 재산 등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있어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위기가구가 법률에 의해 보호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구시 자체 복지사업 및 민간기관 또는 단체와 연계를 통해 지원 방안을 적극 강구하고 있습니다.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의 지연신고 조사요청

➔ **고충요지** : 저는 현재 장애인시설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글을 쓰게 된 이유는 사회 복지사로서 장애인복지법에 명시되어 있는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로서의 의무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 때문입니다. 사건은 2021년 10월 31일 야간시간에 발생했습니다. 시설에 거주 중인 지적장애인 A가 커피포트에 물을 끓여 같은 방에 거주 중인 B에게 화상을 입힌 것입니다. 현재 B는 푸른병원에 입원하여 화상치료 중에 있습니다. 11월 1일 오전 9시경 직원회의 시간에 직원들이 상해사건을 인지하고, 장애인복지법 59조 2항(신고의무자는 장애인학대를 인지하면 지체없이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의 신고 의무자로서 경찰서에 신고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원장은 신고를 요청하는 직원들에게 “신고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성급하게 행동하지 말라, 사건 경위부터 파악해야 한다.”라며 직원들의 신고요청을 묵살하고, 또한 신고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또한 관할 구청에도, 법인에도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11월 2일 오전 직원회의 시간에도 원장은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는 직원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11월 2일 오후 법원에서 화상상해사건을 파악하고 원장에게 서면 보고할 것과 관할 구청에 보고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후 원장은 법인과 관할구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였습니다. 11월 3일 오전에 해당 경찰서 형사과에 신고하였습니다. 원장의 업무태만과 직원들의 신고를 막고,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로서의 지연 신고에 대해 조사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 **처리결과** : 1.먼저 대구시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와 절차)에 따라 누구든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제59조의11에 따른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라 한다)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시설의 원장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장애인학대를 인지한 사람은 인권지킴이단을 통하거나 인권지킴이단을 거치지 않고 바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및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4.귀하께서 요청하신 장애인학대 신고지연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및 수사기관에서 조사 중이며, 그에 따라 조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주거급여 관련하여

➡ **고충요지** : 현재 뇌전증, 간질 질병이 있으며 왼손도 불편한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장애인 신청이 가능한지, 그리고 주거급여가 떨어졌는데 왜 떨어졌는지에 대하여

➡ **처리결과** : 상기 세대는 기존에 2020년 기초생활수급제도를 신청하였으나, 금융재산으로 인하여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이후 2021년 10월에 재신청한 세대로서 신청인은 금융재산 보유액이 현저히 감소하였으나, 현재 적합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 지침에 따른 금융재산 자연 감소가 완료되는 2025년에 재신청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 자격기준

➡ **고충요지** : 저는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이 목표인 현직 어린이집원장입니다. 그런데 국공립 위탁 지원자 자격에 보면 대구시 00구는 개인자격에 00구에 거주하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자격을 갖춘 대구시에 사는 시민들에게 공평하게 기회를 제공하여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00구도 마찬가지로 00로만 기준을 두는것 같은데, 다른 구처럼 대구시민이면 공개채용에 응시할 자격을 부여받았으면 합니다.

➡ **처리결과** :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제24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그 구체적인 사항은 국립어린이집의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고, 공립어린이집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립어린이집의 경우 해당 지자체에서 수탁자 선정기준, 공개경쟁에 관한 내용, 심의방법과 절차 등을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월 돌봄인력 백신접종 대상자 늘려주세요.

➔ **고충요지** : 현재 지역아동센터로 파견근무중인 아동복지교사 종사자 중 한사람입니다. 이번 7월 돌봄인력 종사자 백신접종 범위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7월부터 계약근무중인 복지사·지역아동센터로 배정받아 복무중인 공익요원은 모두 해당자라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역아동센터에서 가장 아동들과 밀접촉을 하고 있는 저희 아동복지교사는 대상 제외입니다. 근무형태로 봐서 저희 아동복지교사를 대상자에 꼭 넣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무 도중에 잔여백신 잡기 위해 아동들에게 피해를 줄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꼭 접종대상자 범위를 대구 전지역 아동복지교사로까지 확대해 주시길 건의합니다.

➔ **처리결과** :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코로나19 예방접종 3분기 시행계획'에 7월 코로나19 백신 우선 접종대상자로 돌봄인력이 포함됨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지역아동복지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에 근무하는 법정종사자·국비지원인력 외 한시돌봄인력 및 지자체 추가인력 등 기관에서 상시 근무하는 모든 종사자가 우선 접종대상자입니다. 해당 대상자에 대한 명단은 지자체별 아동복지시설 등 관련 부서에서 명단취합 후 질병관리청에 명단을 통보하며, 통보된 대상자에 한하여 7월14일부터 17일까지 사전예약 후 7월 28일부터 접종이 가능합니다.

공공근로 신청 탈락되었습니다.

➔ **고충요지** : 공공근로 신청을 두 번이나 신청하고 탈락이 되어서 문의드립니다. 저는 혼자 살며 건강상 문제로 외근직을 못하고 차상위본인경감대상자로 의료비혜택만 보고 있는 형편입니다. 첫번째 탈락은 공원 청소요원으로 고혈압 등 질병에 이유로 장시간 외근직(공원청소)이라 어렵다고 말하니깐 일자리정책과로 다시 전화 연결 자리 확인을 해보라 해서 물어봤지만 자리가 없어서 포기하게 되었고 이번 9월엔 시간은 짧지만 저 혼자 수입이 없고 지출만 계속되고 있는 형편에 적게나마 벌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안전도우미로 2시간 근무도 탈락되었고, 도로청소원으로 일자리가 있다고 연락을 받았지만 건강상 오래 다니는 일을 못하고 일단 차상위 본인경감대상자로 소득제한으로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손가락 마비 증상으로 병원에 계속 다녀야 할 경우 의료비 혜택만 보고 있지만 의료비 혜택도 못 받으면 더 어려울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나라정책, 일자리 정책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지만 저 같은 50대 저소득층은 무조건 길거리 청소만 해야 되는 겁니까? 청년실업이 심각해서 공공 근로도 청년우선 선발로 하는 건 압니다. 그렇지만 저 같이 건강상 이것도 저것도 못해 포기나 탈락되어 힘든 경우를 생각해서 일자리를 여러 분야나 청년이던 컴퓨터를 할 수 있는 경우 나이 제한 없이 여러 가지 일자리에 신청할 수 있게 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답답한 심정으로 어디에도 하소연 할 곳도 없어 글 올립니다.

➔ **처리결과** : 우선 지난 8월 초순에 모집한 공공일자리 3단계 사업에 귀하께서 탈락하신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공공일자리 사업은 행정지원, 공공서비스 지원, 생활방역, 환경정비, 재해예방 등의 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구청에서는 야외 근무와 실내 근무 간에 업무량과 근무 강도 차이가 없도록 사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각 구군 담당 부서에서는 공공일자리 사업에 동참을 희망하는 시민들이 대부분 주민센터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실 때 본인이 희망한 분야에 배정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나, 일부 특정 분야에 지원자가 많을 경우는 참여자의 연령대와 각종 기능기술 보유 여부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근무지를 배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내년 1월 초순에 공공일자리 사업 참여를 신청하실 때 희망하는 참여 분야를 선택하여 제출하시고, 세부적인 근무지 배치 관련 문의와 개인 사정에 대한 설명은 00청 일자리정책과로 다시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컬러풀 드림카드 IC칩, 디자인 교체 발급요청

➔ **고충요지** : 급식카드(컬러풀 드림카드)는 경제적 빈곤 상태에 놓여 있는 가정의 아이들에게 학교에서 급식을 먹지 못할 경우 학교 밖에서 급식에 준하는 식사를 지원하기 위한 좋은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아동이 카드를 사용할 때 신원이 노출되면서 심리적 위축감을 느끼고 수치심이 느껴진다면 카드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도 일반 카드 디자인 형식으로 변경하도록 지자체에 안내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미 2019년에 변경하였고 경기도, 부산, 인천, 춘천, 울산 등 대부분의 도시에서 IC칩을 삽입하여 편의성을 높이고, 일반체크카드 디자인으로 교체 발급을 하고 있으나, 대구는 여전히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식단가 또한 대구 경북이 제일 낮음을 기사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컬러풀 카드 공식 홈페이지의 서비스 목적에는 급식아동의 인권보호, 수치심 해소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정말 이 목적이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 아이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이 시기는 한 번뿐입니다. 보살핌을 받고 있다는 안정감이 아닌 낙인감을 주는 사회의 제도로 인해 성인이 되었을 때 오히려 사회에 대한 반감도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카드명 '컬러풀 드림'처럼 아이들이 자유롭게 미래를 꿈꾸며 자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카드교체비용의 예산 문제는 대구은행을 비롯한 혁신도시 공공기관과의 사회공헌활동과 연계하는 등의 여러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교체를 요청 드립니다.

➔ **처리결과** : 귀하께서 요청하신 사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급식카드 변경(IC카드 도입 및 일반체크카드 디자인으로 변경) 건에 대해서 우리시 아동급식카드 운영 협약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아동들이 급식카드를 마음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시 급식단가 또한 인상 추진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행복텃밭 아카데미 신청

➔ **고충요지** :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하는 행복 텃밭 아카데미 1기생 모집 하는데 있어서 그 대상자가 공무원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일반인도 개설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업시간 이 평일 09:00~17:00 공무원 근무시간이 아닌가요! 일반시민은 신청 못하게 하고 이해 가 안되어서 답변을 구합니다.

➔ **처리결과** : 시정업무에 관심을 기울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금번 시행한 ‘행복 텃밭 아카데미’ 교육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4조(교육훈련의 의무)」 및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시행령」에 의거하여 근무능률 및 대민봉사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우리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대민 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에게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이해도 향상과 자연, 식물을 접할 기회를 제공하여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하려는 데 그 목적을 두었습니다. 우리시 농업기술센터는 ‘행복 텃밭 아카데미 교육’과 유사한 과정으로 ‘초보도시농부학교(7월중순 개강 예정, 10회 30시간)’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대시민 농업관련 교육으로 도시농업전문가 양성 과정, 신규농업인(귀농귀촌)교육 1기, 유기농업기능사 자격취득반(필기반) 이미 추진중에 있으며, 향후에는 신규농업인(귀농귀촌)교육 2기(6월), 3기(일정 미정)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백신접종 후 이상 반응에 대하여

➔ **고충요지** : 청와대 국민청원 복지로 도움신청 등 여기저기 글을 남겼으나 어떠한 구체적인 방안도 없습니다. 저는 대구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9월17일 코로나 1차 백신접종 후 일주일 정도 지나서 이상 반응으로 응급실 다녀왔고 관할 보건소를 통해 이상반응 관련하여 보상신청도 해둔 상태입니다. 현재는 이로 인해 직장도 잃었습니다. 응급실은 00병원 두 번 다녀왔고 의사 측은 검사결과 다른 것은 이상없고 심장에 구멍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카센터에서 근무하던 도중 하반신이 갑자기 경련이 왔고 왼쪽 팔 다리가 떨렸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다보니 카센터에서도 쫓렸고 이제는 돈벌이도 없는데 더 억울한 건 카센터 정비허가 문제가 걸려있어서 제 자격증을 걸어두었고 또한 그 때문에 직장인료보험도 현 상태 유지중인데 의료혜택을 받고자 하니 어떠한 혜택도 받을 수 없고 기존 부정맥이 있는 터라 실비보험도 가입하지 못한 상태인데 앞으로 심장내시경 후 수술이나 시술을 할지도 모르는 상태여서 돈없고 직장없고 갑자기 건강문제에 직면하여 어떠한 도움 받을 길조차 없이 하루하루 막연하게 검사날짜까지 집에서 기다리는 상태입니다. 또한 이러한 사례가 백신 인과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었습니다. 그리고 2차 접종을 했습니다. 차라리 더 악화되길 바라는 마음에 그 선택을 했습니다. 관할 보건소 및 관청 등 누구 하나 무조건 증빙자료가 없다는 게 큰 문제였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글을 남깁니다.

➔ **처리결과** : 질병관리청에서는 코로나19 백신접종 후 이상 반응에 대해 다양한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에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에 따라 백신과의 인과성을 평가하여 피해보상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귀하께서 신청해주신 건에 대해서는 대구시에서 기초 조사 완료 후 중앙에서 검토 중에 있으며 백신과의 인과성이 인정되는 경우 피해보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전국적으로 피해보상 신청 건수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 판정이 늦어지고 있는 점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다. 조사 중 해결 민원 사례

불법투기 단속 직원 민원 신고

➡ **고충요지** : 00구 원룸 앞 3월 9일 18시 외출자체를 하지 않았으며, 쓰레기 배출을 하지 않았으나, 확인하지 않고 불법투기를 했다고 경고장을 붙인 것에 대해 민원을 넣습니다. 또한, 소재지 방문-사회적 거리 단계를 위해 <확인을 위한 초인종 누르기 및 문 두드리기>와 같은 방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도 없이 <알람>이 아니라 문에 붙여 놓는 <경고장>과 같은 내용은 유감을 표하고 싶습니다. 또한, 현재 대학로 원룸촌에서는 분리수거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방문해보시면 아실텐데요. 00구만 해도 플라스틱, 유리병을 분리해서 버릴 수 있게 거름망이 집집마다 있습니다. 00구는 어떨까요? 이삿날 그 흔한 거름망도 비치가 안되어있는거 보고 기겁했습니다. 김장비닐에 일반쓰레기에 플라스틱에, 유리병에... 그런 집들은 불법투기 했다는 종이 다 붙이시는거죠?

➡ **처리결과** : 조사 중 해결(본인 취하)

아이스팩 재활용사업 항목 추가 제안

➡ **고충요지** : 지금도 하고 있는 종이팩, 폐건전지 종량제 교환사업에 아이스팩도 추가해 주세요. 아이스팩 수거함 따로 만드는 것보단 추가 사업비 없이 바로 시행 할 수 있을거 같습니다. 이미 타지역도 아이스팩 교환 사업 진행중입니다.

➡ **처리결과** : 조사 중 해결(본인 취하)

대구의료원 코로나 격리관리 문제점

➔ **고충요지** : 대구 00병원 퇴원환자(4월12일) 확진판정. 민원인의 아들은 4월14일 오후 입원, 같은 병실 입원 안함. 다른병실 입원. 4월18일 병동전체 대구00병원 격리조치 받음. 민원인의 아들은 코로나 검사결과 음성판정, 보건당국 조치에 따라 4월19일 대구 00병원으로 이송

문제점

1. 샤워를 못함
2. 병실내 화장실 문이 안닫힘
3. 병원배식을 일회용용기 사용하여 항상 찬음식 섭취
4. 3끼외 간식이 지급 안됨
5. 간식을 외부에서 전달도 안된다고 함.

상기 문제점으로 수술의 영양공급이 원만치 않아 2차건강이 우려되며 개인 위생관리도 문제가 됩니다. 대구 00병원에서는 2주간 무조건 어쩔수 없이 이 상태로 지내야 한다는 답변만 하고 있고 환자 건강을 위해 상기 문제점들을 조속히 해결 해 주셨으면 합니다. 교도소보다도 못한 시설과 환자 관리가 몹시 불만스럽습니다.

➔ **처리결과** : 조사 중 해결(본인 취하)

통장압류 해지 관련 연락처 문의

➡ **고충요지** : 2017년 통장압류가 되었으나, 2020년 채무완료를 하였지만, 해지 통보를 받지 못하여 아직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어디로 전화를 해야 되나여? 참고로 통장압류는 저축은행에서 빌린 금액 때문에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채무 변제를 위하여 타고 다닌 자동차를 매매를 하였고, 매매할 당시 차는 팔았으나, 중고차 딜러가 통장으로만 돈을 거래한다고 하여, 그 금액을 받지 못하였고, 2018년 1월 경 무료법률상담자문을 받고 중고로 판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진행을 하였었습니다. 자동차 세금만 내면 바로 받을 수 있다고 하였으나, 현재까지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처리되는 정확한 명칭을 알고 싶습니다.

➡ **처리결과** : 조사 중 해결(본인 취하)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부당해고 근로자 원직 복직 촉구합니다.

➡ **고충요지** : 근로자 000은 대구시와 기업의 지원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공직유관기관에서 2019년 12월 24일 회사에서 해고 처분을 받았지만, 중앙노동위원회(2020년 7월 28일 판정)와 대전 행정법원(2021년 11월 9일)에서는 [회사는 부당 해고임을 인정하고, 근로자를 원직 복직시키고, 임금 상당액 지급 이행] 결정. 회사는 위 결정을 이행하지 않고, 강제이행금과 소송비용으로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하여 근로자의 원직 복직 등 이행을 촉구하여 주시기 당부 바랍니다.

➡ **처리결과** : 조사 중 해결(본인 취하)



CHAPTER

03

인권 분야 고충민원 현황 및 처리 결과

1. 고충민원 현황 및 처리 결과 요약
 - 가. 고충민원 현황
 - 나. 고충민원 처리 결과 요약
2. 고충민원 사례 및 처리 결과

01

고충민원 현황 및 처리 결과 요약

가. 고충민원 현황

구분	접수 건수	조 사 결 과 처 리 현 황												
		인권 분야								타 분야				
		소계	수용	대안 제시 및 안내	불가	조사중 해결	조사 (처리) 진행중	시정권고 의견표명		소계	수용 및 안 내	불가	조사중 해결	조사 (처리) 진행중
								수용	불가					
2021	2	2	-	1	-	-	-	1	-	-	-	-	-	-
2020	4	-	-	-	-	-	-	-	-	4	4	-	-	-
2019	23	12	-	11	-	-	-	1	-	11	11	-	-	-
2018	32	14	-	12	-	-	-	2	-	18	18	-	-	-

나. 고충민원 처리 결과 요약

| 인권 분야 및 타 분야 |

신청취지	처리결과
복지생활시설 생활인 인권침해 여부 조사	의견표명
대구000회의 사회복지사에 대한 갑질	안내

02

고충민원 사례 및 처리 결과

가. 시정권고 의견표명 민원 사례

➔ **고충요지** : 복지생활시설 생활인의 인권침해 우려에 대한 의견표명

➔ **처리결과** : 2021년 1월 28일 복지생활시설에서 생활인에 대한 인권침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하여 해당 법인에서 자체 확인 및 조사 후 인권옴부즈만에게 해당 상황이 보고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인권침해가 의심되는 내용(종사자가 생활인에게 각서를 작성하도록 지시)이 확인되어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시설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도록 법인에 의견을 표명하였으며, 해당 종사자를 포함한 시설 종사자들에게 생활인들의 인권침해가 되는 일이 없도록 인권 및 직무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함.

나. 대안제시 및 안내 민원 사례

➔ **고충요지** : 대구000회의 사회복지사에 대한 갑질

➔ **처리결과** : 대구광역시 인권옴부즈만은 '대구광역시 복지 및 인권옴부즈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하여 대구광역시의 사회복지시설 생활인들의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해 시민에 의한 행정 감시 기능을 수행하는 자이므로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는 업무영역이 아니기에 관련부서로 이첩하였습니다.

어려움을
함께하는 따뜻한
복지·인권 대구 구현





CHAPTER

04

복지 및 인권 옴부즈만 활동 현황 및 자문위원

1. 복지옴부즈만 활동사진
2. 인권옴부즈만 활동사진
3. 복지 및 인권옴부즈만 홍보 현황
4. 복지 및 인권옴부즈만 자문위원

01

복지옴부즈만 활동사진



제1차 복지옴부즈만 자문위원회



제1차 복지옴부즈만 자문위원회



제1차 권익위원회 전국협의회



제2차 권익위원회 전국협의회



제2차 복지옴부즈만 자문위원회

복지옴부즈만 활동사진



제2차 복지옴부즈만 자문위원회



복지옴부즈만 자문위원회 상인역 홍보활동



복지옴부즈만 자문위원회 상인역 홍보활동



제3차 복지옴부즈만 자문위원회



제3차 복지옴부즈만 자문위원회

02

인권옴부즈만 활동사진



제1차 인권옴부즈만 자문위원회



제1차 인권옴부즈만 자문위원회



사회복지시설 방문



희망원 마을원장 업무협의



사회복지시설 방문 상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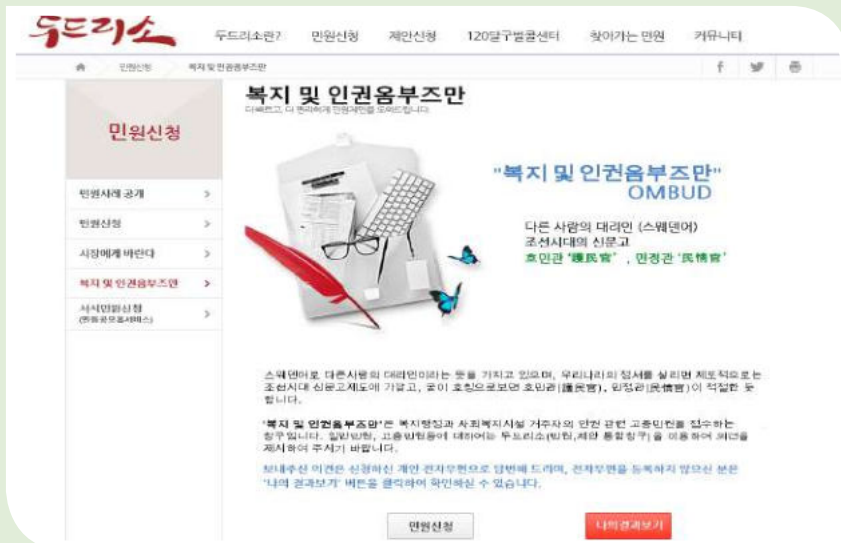
사회복지시설 방문 상담

03

복지 및 인권옴부즈만 홍보 현황



대구광역시 복지 및 인권옴부즈만 홈페이지



두드리소 복지 및 인권옴부즈만 민원신청 화면





복지신문고

복지신문고를 올려주세요~
대구광역시 **복지옴부즈만**이
여러분 곁을 찾아갑니다.

내가 받아야 할 복지혜택이 궁금하십니까?

받아야 할 복지혜택을 못 받아 억울하십니까?

복지제도나 행정 때문에 불편함은 없습니까?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 : (우)4154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40(산천동) 101 동 1층 대구광역시청별관 복지옴부즈만실
- 인터넷접수 : 복지옴부즈만 홈페이지(<http://www.daegu.go.kr/Umbsdsman>) 두드림신청(<http://dudeunso.daegu.go.kr/>)
- 전화접수 : 10531803-6233, 6235 팩스접수 : 10531220-6235

긴급복지지원제도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은?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층으로 위기사유와 소득·재산 기준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입니다.

갑작스러운 위기사유란?

- 주소특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급시설 수용 등 사유로 소득 상실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특자의 휴·폐업
- 주소특자의 실직으로 생계유지 곤란
- 단전 1개월 경과 시
- 홀소 후(기초생활보장사업 연계) 생계 곤란
- 가족으로부터 방임,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 위기에 처한 경우
- (노숙인시설 및 노숙인종합지원센터의 상담을 통해 자편 결정)



복지옴부즈만 리플릿



대구광역시 인권 옴부즈만
국회의원과 민선시장

인권 분야 고충민원 상담 Q&A

Q 대구에서 발생하는 모든 인권 문제를 대상으로 하나요?
A 인권옴부즈만은 시민복지시설 거주자와 인권침해 사례에 대해서만 조사 및 처리 권한을 가집니다.

Q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본인이나 보호자 또는 제3자 등 누구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Q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A 고충민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구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Q 대구광역시 인권옴부즈만의 정보를 좀 더 알고 싶습니다.
A 대구시청 홈페이지(daejeon.daejeon.go.kr)에서 인권·소통·참여·복지팀 인권옴부즈만으로 들어가면 대구광역시 인권옴부즈만의 전반적인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Daegu Metropolitan City Human Ombudsman

사회적 약자의 인권지킴이
대구광역시 인권옴부즈만이
어려운 곁에 있습니다.

인권 옴부즈만

대구광역시청 별관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302(7층) 101호 인권옴부즈만실

대구광역시

소통의 혁신이 대구

<https://dodourisn.daejeon.go.kr/>

대구광역시 인권 옴부즈만

인권 분야 고충민원 상담·신청 안내
사회적 약자의 인권지킴이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인권옴부즈만 소개

01 옴부즈만이란?
→ 「국정감사법」 제80조 제2항 제2호나 시민의 권리 보호 기능을 수행하는 독립 기관

02 인권옴부즈만이 하는 일
→ 「대구광역시 생활 시책에서 시정 거주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직권자사로 업무 수행
→ 「대구광역시 생활 시책에서 시정 거주자의 인권 분야 고충민원 상담 및 조사
→ 「인권침해 시책집행 시정 시정 및 대응 방안

03 인권옴부즈만의 직무 권한 제외
→ 시정에게 권한 사항
→ 다른 법률에 의해 위임받지 않은 권한 사항
→ 수직적 관계에서 수직 또는 수평적 권한 사항
→ 법원에 의해 당사자 간에 이해관계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가 인정 중인 사항

인권 분야 고충민원의 신청

01 신청대상
→ 대구시 연암로 사회복지시설에서 인권 침해로 인한 피해로 인한 보호자 및 제3자

02 신청방법
→ 전 화 053802-2377
→ 팩 스 053802-2363
→ 우 편 4152 대구시 북구 연암로 4302(7층) 101호 인권옴부즈만실
→ 인터넷 대구시 부민리소 홈페이지
(<https://dodourisn.daejeon.go.kr/>)
(전화상담) 복지 및 인권옴부즈만에서 인권 신청

03 오는 길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302(7층) 101호 인권옴부즈만실

접수 및 처리 과정

01 고충민원의 신청
→ 시민 누구나 문서 또는 구두로 신청

02 고충민원의 조사
→ 고충민원 접수 후 인권침해확인(조사 조사)

03 권고 및 의견 표명
→ 조사 결과에 따라 인권침해가 확인되면 시정에게 권고 및 의견 표명

04 조치 결과의 통보
→ 권고 또는 의견 표명 후 시정 결과 통보
→ 조사 결과에 따라 인권침해가 확인되면 시정에게 권고 및 의견 표명
→ 인권옴부즈만은 권고 행위에 따라 시정 결과 통보

인권옴부즈만 리플릿



복지옴부즈만 홍보활동 배너 및 어깨띠



04

복지 및 인권옴부즈만 자문위원

○ 복지옴부즈만 자문위원회 위원 명단

구분	성 명	근 무 처	임 기
위원장	방 성 수	· 대구광역시 복지옴부즈만	‘21.6.21-‘23.6.20
위 원	권 은 주	· 여성신문사 대구.경북지사장	‘21.6.21-‘23.6.20
위 원	박 미 숙	· 청명장기요양센터 센터장	‘21.6.21-‘23.6.20
위 원	김 은 나	· 분리종합사회복지관 관장	‘21.6.21-‘23.6.20
위 원	윤 봉 현	· 대구공업대학교 외래교수	‘21.6.21-‘23.6.20
위 원	이 기 량	· 대구보건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	‘21.6.21-‘23.6.20
위 원	이 민 욱	· (주) 벅커하우스 대표	‘21.6.21-‘23.6.20
위 원	정 광 모	· 변호사	‘21.6.21-‘23.6.20
위 원	이 애 재	· 영진전문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	‘21.6.21-‘23.6.20

○ 인권옴부즈만 자문위원회 위원 명단

구분	성 명	근 무 처	임 기
위원장	박 무 니	·대구광역시 인권옴부즈만	‘21.10.1-’23.10.1
위 원	김 진 희	· 대구장애인재활협회바우처사업강사	‘20.1.24-’22.1.23
위 원	박 정 민	·법무법인 참길 변호사	‘20.1.24-’22.1.23
위 원	백 경 록	·대구시정참여센터 운영위원장	‘20.1.24-’22.1.23
위 원	윤 성 아	· 대구가톨릭대학교 외래교수	‘20.1.24-’22.1.23
위 원	윤 상 철	·대구노숙인종합지원센터 소장	‘20.1.24-’22.1.23
위 원	장 민 철	·대구쪽방상담소장	‘20.1.24-’22.1.23
위 원	조 성 제	·대구한의대학교 부교수	‘20.1.24-’22.1.23
위 원	조 정 훈	· 오마이뉴스 대구·경북 주재기자	‘20.1.24-’22.1.23



CHAPTER

05

부록

1. 지방자치단체 ombudsman 현황
2. 대구광역시 복지 및 인권ombudsman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4. 국가인권위원회법
5. 고충민원신청서 서식

01

지방자치단체 옴부즈만 현황

연번	지자체		명칭	구성	임기(연임제한)	의사결정
1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7명(상근)	3년(단임)	합의제
2	대구광역시		복지·인권옴부즈만	2명(상근)	2년(1회)	독임제
3	울산광역시		시민신문고위원회	5명(상근)	4년(단임)	합의제
4	경 기 도		옴부즈만	10명(비상근)	2년(1회)	합의제
5	강 원 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9명(비상근)	2년(1회)	합의제
6	충청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7명(비상근)	4년(단임)	합의제
7	전라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9명(비상근)	4년(단임)	합의제
8	서울 (13)	성동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8명(비상근)	4년(단임)	합의제
9		동대문구	옴부즈만	2명(비상근)	4년(단임)	독임제
10		강북구	구민참여옴부즈만	5명(비상근)	2년(1회)	독임제
11		도봉구	옴부즈만	4명(비상근)	2년(1회)	독임제
12		은평구	옴부즈만	3명(비상근)	2년(1회)	합의제
13		서대문구	시민감사옴부즈만	5명(비상근)	2년(-)	합의제
14		마포구	옴부즈만	3명(비상근)	2년(1회)	합의제
15		양천구	옴부즈만	3명(비상근)	2년(1회)	독임제
16		구로구	옴부즈맨	3명(상근)	2년(1회)	합의제
17		금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7명(비상근)	4년(단임)	합의제

연번	지자체		명칭	구성	임기(연임제한)	의사결정
18	서울 (13)	동작구	옴부즈만	5명(비상근)	2년(1회)	합의제
19		관악구	옴부즈맨	3명(비상근)	2년(1회)	합의제
20		강동구	구민옴부즈만	5명(비상근)	2년(1회)	독임제
21	대구 (2)	동구	옴부즈만	3명(비상근)	2년(1회)	합의제
22		북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2명(상근)	4년(1회)	합의제
23	인천	미추홀구	옴부즈만	5명(비상근)	2년(1회)	합의제
24	광주 (2)	북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3명(비상근)	2년(1회)	합의제
25		광산구	시민권익위원회	9명(비상근)	2년(1회)	합의제
26	울산 (3)	남구	옴부즈만	2명(비상근)	4년(단임)	합의제
27		북구	옴부즈만	1명(비상근)	2년(1회)	독임제
28		울주군	군민권익위원회	5명(비상근)	2년(1회)	합의제
29	경기 (16)	수원시	시민가디언	5명(비상근)	2년(1회)	합의제
30		성남시	시민옴부즈만	2명(비상근)	4년(단임)	독임제
31		안양시	민원옴부즈만	1명(비상근)	2년(1회)	독임제
32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1명(상근)	2년(1회)	독임제
33		광명시	시민옴부즈만	1명(상근)	2년(1회)	독임제
34		평택시	시민옴부즈만	2명(비상근)	4년(단임)	합의제
35		안산시	시민옴부즈만	3명(상근)	2년(1회)	합의제
36		남양주시	옴부즈만	5명(비상근)	4년(단임)	합의제

연번	지자체		명칭	구성	임기(연임제한)	의사결정
37	경기 (16)	시흥시	시민호민관	1명(상근)	4년(단임)	독임제
38		군포시	기업애로 옴부즈만	-	2년(-)	-
39		용인시	옴부즈만	7명(비상근)	4년(단임)	합의제
40		파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3명(비상근)	4년(단임)	합의제
41		이천시	시민옴부즈만	2명(비상근)	4년(단임)	합의제
42		안성시	시민옴부즈만	4명(비상근)	2년(1회)	합의제
43		화성시	시민옴부즈만	3명(상근)	2년(1회)	합의제
44		여주시	옴부즈만	재위촉중	4년(단임)	합의제
45	강원 (2)	원주시	고충처리위원회	6명(비상근)	4년(단임)	합의제
46		강릉시	사회갈등조정위원회	7명(비상근)	2년(1회)	합의제
47	충북 (2)	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8명(비상근)	4년(단임)	합의제
48		영동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8명(비상근)	4년(단임)	독임제
49	충남 (2)	아산시	시민옴부즈만	2명(상근)	2년(1회)	합의제
50		부여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7명(비상근)	4년(단임)	합의제
51	전북	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5명(비상근)	4년(단임)	합의제
52	전남 (3)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2명(상근)	2년(1회)	독임제
53		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5명(비상근)	2년(1회)	합의제
54		담양군	고충처리위원회	6명(비상근)	4년(단임)	합의제
55	경북	상주시	옴부즈맨	1명(상근)	2년(1회)	독임제
56	경남	양산시	옴부즈만	3명(비상근)	4년(단임)	합의제

02

대구광역시 복지 및 인권옴부즈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 복지 및 인권옴부즈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7. 5. 10.] [대구광역시조례 제4960호, 2017. 5. 10.,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32조부터 제38조에 따라 설치하는 대구광역시 복지옴부즈만과 인권옴부즈만의 설치·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거주자의 복지와 인권을 보장하고 나아가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복지행정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구광역시 복지옴부즈만”이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복지행정에 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불합리한 제도개선 등을 위해 시민에 의한 행정감시 기능을 수행하고자 설치·운영하는 기관 또는 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2. “대구광역시 인권옴부즈만”이란 시가 사회복지시설 거주자의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해 시민에 의한 행정감시 기능을 수행하고자 설치·운영하는 기관 또는 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3. “인권분야”라 함은 인권의 보장,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의 조사·구제·예방, 인권에 관한 이해 증진과 인식 개선 등을 위한 활동과 연구 및 행정을 포함하는 일련의 사회활동 분야를 말한다.

제3조(설치)

-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 복지행정에 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복지행정의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복지옴부즈만과「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거주자의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한 인권옴부즈만을 설치·운영한다.
- ② 복지옴부즈만과 인권옴부즈만(이하 “복지 및 인권옴부즈만”이라 한다)은 각 1명을 두되 지방임기제 공무원(시간선택제 임기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 ③ 복지 및 인권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직무)

① 복지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시민이 제6조 각 호의 기관이나 개인이 수행한 복지분야 행위에 대하여 제출한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 및 처리
2. 복지분야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과 그 내용의 공표
3. 복지분야 행정제도 및 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 표명과 그 내용의 공표
4. 스스로의 발의에 의한 복지분야 사안의 채택조사
5. 복지분야의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에 대한 조정·중재
6. 복지분야 집단민원의 조정·중재
7. 그 밖에 복지분야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 상담 및 민원처리 지원

② 인권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사회복지시설 거주자가 제6조 각 호의 기관이나 개인이 수행한 인권분야 행위에 대하여 제출한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 및 처리
2. 인권분야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과 그 내용의 공표
3. 인권분야 행정제도 및 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 표명과 그 내용의 공표
4. 스스로의 발의에 의한 인권분야 사안의 채택조사
5. 인권분야의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에 대한 조정·중재
6. 인권분야 집단민원의 조정·중재
7. 그 밖에 인권분야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 상담 및 민원처리 지원

③ 복지 및 인권옴부즈만은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제5조(직무관할 제외)

복지 및 인권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는 관여하지 못한다.

1. 시의회에 관한 사항
2. 행정심판, 소송 등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3. 감사원·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행정기관에서 감사가 진행 중인 사항
4. 검찰·경찰·수사기관에서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5. 법령에 의하여 화해·알선·조정 또는 중재 등 당사자간의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제6조(관할기관)

복지 및 인권옴부즈만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하 “관계 행정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 및 그 소속행정기관
2. 자치구·군(시의 위임사무에 한한다)
3.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공기업 및 출연기관
4. 시의 민간위탁기관(시의 위탁사무에 한한다)
5.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재정법」에 의하여 시로부터 복지분야 보조금을 지원받는 개인이나 법인 및 단체

제7조(자격 요건 등)

① 복지 및 인권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공개모집에 의해 시장이 임용한다.

1. 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분야 또는 인권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이 있는 자
2. 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분야 또는 인권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이 있는 자
3. 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분야 또는 인권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7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이 있는 자
4. 학사학위 취득 후 9년 이상 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분야 또는 인권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5. 12년 이상 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분야 또는 인권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6.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한 자로서 사회복지행정과 관련된 분야 또는 인권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7. 4급 이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8. 대학 또는 대학교에서 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분야 또는 인권분야의 부교수 이상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중 사회복지관련 석사학위 또는 인권관련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9. 변호사 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10. 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분야 또는 인권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시민사회 단체에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행정기관에 등록된 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 ② 복지 및 인권옴부즈만의 채용계약, 채용기간 등 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지방공무원인사규칙」을 준용한다.

제8조(신분보장)

복지 및 인권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1.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한 경우
2.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계약기간 동안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3. 복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제9조를 위반하여 복지 및 인권옴부즈만 이외의 직을 겸하는 경우
6. 그 밖에 직무수행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제9조(겸직금지)

- ① 복지 및 인권옴부즈만은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정당과 관련된 직위를 겸직할 수 없다.
- ② 복지 및 인권옴부즈만은 법 제2조에 따른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 ③ 복지 및 인권옴부즈만은 법 제2조에 따른 각종 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

제10조(자문위원회의 구성)

- ① 복지 및 인권옴부즈만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각각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② 각 자문위원회는 위원 9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복지 및 인권옴부즈만이 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③ 위원은 해당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복지 및 인권옴부즈만이 2명, 시장 및 시의회의장이 각각 3명씩 추천한 자를 시장이 위촉한다.
- ④ 자문위원회는 분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 ⑤ 위원의 수당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자문위원회의 기능)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자문위원장이 전문적 기술적 사항에 대한 자문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고충민원의 신청)

- ① 시민(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은 시의 복지 및 사회복지시설 거주자의 인권분야 사무집행에 관한 사항과 당해 업무에 관한 직원의 행위에 대하여 복지 및 인권옴부즈만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복지 및 인권옴부즈만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문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문서에 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신청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이름과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2. 신청의 취지이유와 고충민원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내용
- ③ 고충민원의 신청은 대리인으로도 할 수 있다.

제13조(고충민원의 이첩)

복지 및 인권옴부즈만은 접수된 고충민원 중 직접 조사·처리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관계 행정기관에 이첩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고충민원의 조사)

- ① 복지 및 인권옴부즈만은 해당분야 고충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7일 이내에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고충민원을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2. 고충민원의 내용이 거짓이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
 3. 그 밖에 고충민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복지 및 인권옴부즈만이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② 복지 및 인권옴부즈만은 조사를 개시한 후에도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 등 조사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중단할 수 있다.

- ③ 복지 및 인권옴부즈만은 접수된 민원에 관하여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조사를 중단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고충민원 조사방법)

- ① 복지 및 인권옴부즈만은 제14조에 따라 조사를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의견제출 또는 관련 자료·서류 등의 제출요구
 2. 관계 행정기관의 직원·신청인·이해관계인이나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요구
 3. 조사사항과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시설 등에 대한 실지조사
-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복지 및 인권옴부즈만의 요구나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고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6조(권고 및 의견 표명)

- ① 복지 및 인권옴부즈만은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처분 등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적절한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 ② 복지 및 인권옴부즈만은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도개선 등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제17조(의견제출 기회의 부여)

관계 행정기관의 직원,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고충민원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18조(조치결과의 통보)

- ① 제16조에 따라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복지 및 인권옴부즈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이 그 권고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복지 및 인권옴부즈만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 ③ 복지 및 인권옴부즈만은 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에서 통보받은 고충의 조사결과를 고충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감사의 의뢰)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법·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복지 및 인권옴부즈만은 시에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20조(공표 등)

- ① 복지 및 인권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다만, 법률에 따라 공표가 제한되거나 개인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표명의 내용
 2. 제18조 제1항에 따른 처리결과
 3. 제18조 제2항에 따른 권고내용의 불이행 사유
- ② 기타 고충민원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국가인권위원회법」을 준용한다.

제21조(사무기구)

- ① 시장은 복지 및 인권옴부즈만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사무기구를 두며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사무기구 직원은 복지 및 인권옴부즈만의 활동 및 그에 관한 업무를 보좌한다.
- ③ 복지 및 인권옴부즈만의 직무수행을 위한 조사 및 업무보조를 위하여 전문조사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복지 및 인권옴부즈만의 추천으로 시장이 위촉하며, 위촉기간은 민원조사 등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
- ④ 전문조사원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공인의 사용)

- ① 복지 및 인권옴부즈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각종 문서 등에 별도의 공인을 각인하여 사용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복지 및 인권옴부즈만 공인의 각인 및 사용은 「대구광역시 공인조례」를 준용한다.

제23조(운영상황 제출)

복지 및 인권옴부즈만은 매년 12월말까지의 활동실적을 다음연도 1월말까지 시장과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옴부즈만으로 임용된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임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개정 2012.5.10 조례 제43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960호, 2017.5.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옴부즈만으로 임용된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임용한 것으로 본다.

0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부패방지국민익법)

[시행 2021. 1. 1.] [법률 제17806호, 2020. 12. 29.,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권익위원회를 설치하여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며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2. 3., 2016. 3. 29., 2017. 4. 18., 2019. 4. 16., 2020. 12. 29.>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다만, 마목의 경우에는 제5장을 적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공공기관으로 본다.
 - 가. 「정부조직법」에 따른 각급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지방의회
 - 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행정기관
 - 다. 「국회법」에 따른 국회, 「법원조직법」에 따른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
 - 라.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이하 “공직유관단체”라 한다)
 - 마.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사립 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기관
2. “행정기관등”이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및 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의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다목의 경우에는 제5장을 적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공직자로 본다.

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나.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다. 제1호마목에 따른 각급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4. “부패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5. “고충민원”이란 행정기관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현역장병 및 군 관련 의무복무자의 고충민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6. “신청인”이란 이 법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대하여 고충민원을 신청한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7. “불이익조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가.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

나.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다.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라.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마.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바.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사.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監査)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아. 인가·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자.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解止),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8. “시민사회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9. “시민고충처리위원회”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나 그 소속 기관의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제도개선을 위하여 제32조에 따라 설치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공공기관의 책무)

- ① 공공기관은 건전한 사회윤리를 확립하기 위하여 부패방지에 노력할 책무를 진다.
- ② 공공기관은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령상, 제도상 또는 행정상의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이를 개선 또는 시정하여야 한다.
- ③ 공공기관은 교육·홍보 등 적절한 방법으로 소속 직원과 국민의 부패척결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④ 공공기관은 부패방지를 위한 국제적 교류와 협력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정당의 책무)

- ① 「정당법」에 따라 등록된 정당과 소속 당원은 깨끗하고 투명한 정치문화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정당 및 소속 당원은 올바른 선거문화를 정착하게 하고 정당운영 및 정치자금의 모집과 사용을 투명하게 하여야 한다.

제5조(기업의 의무)

기업은 건전한 거래질서와 기업윤리를 확립하고 일체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6조(국민의 의무)

모든 국민은 공공기관의 부패방지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공직자의 청렴의무)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의2(공직자의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공직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09. 1. 7.]

제8조(공직자 행동강령)

- ① 제7조에 따라 공직자가 준수하여야 할 행동강령은 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공직자 행동강령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한다.
 1. 직무관련자로부터의 향응·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계·이권개입·알선·청탁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공직자가 지켜야 할 사항
 4.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공직자의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공직자가 제1항에 따른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한 때에는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른 징계의 종류, 절차 및 효력 등은 당해 공직자가 소속된 기관 또는 단체의 징계관련 사항을 규정한 법령 또는 내부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공직자의 생활보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직자가 공직에 헌신할 수 있도록 공직자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그 보수와 처우의 향상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권익구제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 국민의 권익을 구제하거나 사회정의와 공익증진을 위한 법령·제도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인권위원회 등 행정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장 국민권익위원회

제11조(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 ①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 6. 9.>

- ② 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신설 2020. 6. 9.>

제1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0. 1. 25.>

1. 국민의 권리보호·권익구제 및 부패방지를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및 이와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3. 고충민원을 유발하는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4. 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5. 공공기관의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 및 제도개선 사항의 수립·권고와 이를 위한 공공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6. 공공기관의 부패방지시책 추진상황에 대한 실태조사·평가
7. 부패방지 및 권익구제 교육·홍보 계획의 수립·시행
8. 비영리 민간단체의 부패방지활동 지원 등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개인·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9.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국제협력
10. 부패행위 신고 안내·상담 및 접수 등
11. 신고자의 보호 및 보상
12. 법령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검토
13. 부패방지 및 권익구제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관리 및 분석
14. 공직자 행동강령의 시행·운영 및 그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처리 및 신고자의 보호
15.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상담 및 민원사항 처리실태 확인·지도
16.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통합 운영과 정부민원안내콜센터의 설치·운영
17.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한 협력·지원 및 교육
18. 다수인 관련 갈등 사항에 대한 중재·조정 및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기업고충민원의 조사·처리
19. 「행정심판법」에 따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0.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된 사항
21. 그 밖에 국민권익 향상을 위하여 국무총리가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13조(위원회의 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의 위원(부위원장 3명과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다)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부위원장은 각각 고충민원, 부패방지 업무 및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업무로 분장하여 위원장을 보좌한다. 다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 1. 25.>
- ② 위원장, 부위원장과 위원은 고충민원과 부패방지에 관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8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3.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4.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5. 제33조제1항에 따라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그 직에 4년 이상 있었던 자
 6. 그 밖에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임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상임이 아닌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상임이 아닌 위원 중 3명은 국회가, 3명은 대법원장이 각각 추천하는 자를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2. 2. 17.>
-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각 정무직으로 보하고,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4. 5. 28.>
- ⑤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제14조(위원장)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위원의 결격사유)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자
-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제16조(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 ①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 ②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2.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때
 3. 제17조에 따른 겸직금지위무에 위반한 경우
- ④ 제3항제2호의 경우에는 전체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을 거쳐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가 면직 또는 해촉한다.

제17조(위원의 겸직금지 등)

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2. 행정기관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제1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제20조에 따른 소위원회 및 제21조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9. 4. 16.>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당해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당해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되기 전에 당해 사안에 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사항
 5. 위원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 ② 위원회, 제20조에 따른 소위원회 및 제21조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6.>
-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 ④ 위원회, 제20조에 따른 소위원회 및 제21조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에 관한 사무에 관여하는 위원회의 소속 공무원(제25조에 따른 파견 공무원 및 직원을 포함한다) 및 제22조에 따른 전문위원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9. 4. 16.>

제19조(위원회의 의결)

-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20조제1항제4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제18조에 따라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제19조제1항에 따른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소위원회)

- ① 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1. 제46조에 따른 시정을 권고하는 사항 중 다수인의 이해와 관련된 사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2. 제47조에 따른 제도개선을 권고하는 사항
 - 3. 제51조에 따른 감사의뢰의 결정에 관한 사항
 - 4. 위원회의 종전 의결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사항
 - 5. 소위원회가 위원회에서 직접 처리하도록 의결한 사항
 - 6. 그 밖에 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 ② 소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그 밖에 소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분과위원회)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2조(전문위원)

-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전문적인 조사 및 연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에 학계, 사회단체 그 밖에 관련분야의 전문가를 전문위원으로 둘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은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23조(사무처의 설치)

-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 ② 사무처에 사무처장 1명을 두되, 사무처장은 위원장이 지명한 부위원장이 겸직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③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자문기구)

- ①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자문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공무원 등의 파견)

- ①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기관 또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공무원이나 직원을 파견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기관 또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의 장은 위원회에 파견된 자에 대하여 인사·처우 등에 있어서 우대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26조(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등)

- ① 위원회는 매년 고충민원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운영상황을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고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과 국회에 특별보고를 할 수 있다.

제27조(제도개선의 권고)

-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제도개선의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이를 제도개선에 반영하여 그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이에 대한 이행실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라 제도개선의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권고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이를 재심의하여야 한다.

제27조의2(공공기관 부패에 관한 조사·평가)

- ① 위원회는 공공기관의 부패를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지표를 개발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평가지표를 활용하여 공공기관의 부패에 관하여 조사·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조사·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공공기관에 대하여 부패방지를 위한 컨설팅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3. 29.]

제27조의3(조사·평가결과의 공개)

- ① 제27조의2에 따라 위원회의 조사·평가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그 조사·평가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조사·평가결과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3. 29.]

제28조(법령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검토)

-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법령 등의 부패유발요인을 분석·검토하여 그 법령 등의 소관 기관의 장에게 그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6.>
 1. 법률·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
 2. 법령의 위임에 따른 훈령·예규·고시 및 공고 등 행정규칙
 3.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

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지방공단 내부규정

② 제1항에 따른 부패유발요인 검토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제12조제5호부터 제14호에 따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서류 등의 제출요구 및 실태조사
2.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관계 공직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
2. 수사·재판 및 형집행(보안처분·보안관찰처분·보호처분·보호관찰처분·보호감호처분·치료감호처분·사회봉사명령을 포함한다)의 당부에 관한 사항 또는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
3. 행정심판·소송, 헌법재판소의 심판, 헌법소원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4. 법령에 따라 화해·알선·조정·중재 등 당사자간의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5. 판결·결정·재결·화해·조정·중재 등에 따라 확정된 사항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

③ 제1항 각 호의 조치는 제12조 각 호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그쳐야 하며 공공기관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이나 실태조사 등에 성실하게 응하고 이에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⑤ 공공기관의 장은 제도의 개선 등과 관련하여 소속 직원 또는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30조(비밀누설의 금지)

위원회의 위원, 전문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 및 위원회에 파견되거나 위원회의 위촉에 의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1조 삭제 <2019. 4. 16.>

제3장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제32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 ①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 등을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2.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3.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4.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5.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 상담 및 민원처리 지원
 6.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7.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권익구제기관 등과의 교류 및 협력
 8.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개인·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9.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위탁된 사항

제33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 등)

- ①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은 고충민원 처리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거쳐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3.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4.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 ②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 중 결원된 경우에는 임기만료 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 ④ 결원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인 후임으로 위촉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인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제34조(활동비 지원)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설치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제32조제2항의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35조(위원회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15조, 제16조제3항, 제17조, 제18조, 제25조 및 제83조의2제1항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9. 4. 16.>

제36조(사무기구)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둔다.
- ② 사무기구에는 사무기구의 장과 그 밖의 필요한 직원을 둔다.

제37조(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등)

- ①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매년 그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운영상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 ②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고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에 특별보고를 할 수 있다.

제38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4장 고충민원의 처리

제39조(고충민원의 신청 및 접수)

- ① 누구든지(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권익위원회”라 한다)에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하나의 권익위원회에 대하여 고

충민원을 제기한 신청인은 다른 권익위원회에 대하여도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문서에 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신청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이름과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2. 신청의 취지·이유와 고충민원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내용
3. 그 밖에 관계 행정기관의 명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신청인은 법정대리인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의 자격은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2. 신청인인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3. 변호사
4.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고충민원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는 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의 자로서 권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

- ④ 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고충민원서류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권익위원회가 고충민원서류를 보류·거부 또는 반려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0조(동일한 고충민원의 상호 통보)

신청인이 제39조제1항 후단에 따라 동일한 고충민원을 둘 이상의 권익위원회에 각각 신청한 경우 각 권익위원회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상호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권익위원회는 상호 협력하여 고충민원을 처리하거나 제43조에 따라 이송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 4. 16.]

제41조(고충민원의 조사)

- ① 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4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2. 고충민원의 내용이 거짓이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

3. 그 밖에 고충민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권익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권익위원회는 조사를 개시한 후에도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 등 조사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중지 또는 중단할 수 있다.
- ③ 권익위원회는 접수된 민원에 관하여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조사를 중지 또는 중단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2조(조사의 방법)

- ① 권익위원회는 제41조에 따라 조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 행정기관등에 대한 설명요구 또는 관련 자료·서류 등의 제출요구
 2. 관계 행정기관등의 직원·신청인·이해관계인이나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요구
 3. 조사사항과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시설 등에 대한 실지조사
 4. 감정의 의뢰
- ② 권익위원회의 직원이 제1항에 따라 실지조사를 하거나 진술을 듣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③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권익위원회의 요구나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고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43조(고충민원의 이송 등)

- ① 권익위원회는 접수된 고충민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고충민원을 관계 행정기관등에 이송할 수 있다. 다만, 관계 행정기관등에 이송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고충민원을 각하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6.>
 1.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거나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2.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감사원·지방의회에 관한 사항
 3. 수사 및 형집행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관장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또는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
 4. 행정심판, 행정소송, 헌법재판소의 심판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5. 법령에 따라 화해·알선·조정·중재 등 당사자간의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6. 판결·결정·재결·화해·조정·중재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또는 감사원이 처분을 요구한 사항
 7.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8. 행정기관등의 직원에 관한 인사행정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관계 행정기관등에서 직접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 ② 권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이송 또는 각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권리의 구제에 필요한 절차와 조치에 관하여 안내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6.>
- ③ 행정기관등의 장은 권익위원회의 조사가 착수된 고충민원이 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임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16.>
- ④ 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고충민원을 이송받은 행정기관등의 장은 권익위원회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권익위원회에 그 고충민원의 처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9. 4. 16.>
- ⑤ 권익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이 권익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이송한 고충민원을 직접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충민원이 이송된 때 권익위원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 4. 16.>
- [제목개정 2019. 4. 16.]

제44조(합의의 권고)

권익위원회는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고충민원에 대한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제45조(조정)

- ① 권익위원회는 다수인이 관련되거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고충민원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조정을 할 수 있다.
- ② 조정은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을 조정서에 기재한 후 당사자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고 권익위원회가 이를 확인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18. 4. 17.>
- ③ 제2항에 따른 조정은 「민법」상의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

제46조(시정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

- ① 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처분 등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적절한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 ② 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제47조(제도개선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

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조사·처리하는 과정에서 법령 그 밖의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제48조(의견제출 기회 부여)

- ① 권익위원회는 제46조 또는 제47조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하기 전에 그 행정기관등과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9. 4. 16.>
- ② 관계 행정기관등의 직원·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권익위원회가 개최하는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49조(결정의 통지)

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의 결정내용을 지체 없이 신청인 및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0조(처리결과와 통보 등)

- ① 제46조 또는 제47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은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권고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권익위원회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 ③ 권익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51조(감사의 의뢰)

고충민원의 조사·처리과정에서 관계 행정기관등의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법·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위원회는 감사원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52조(권고 등 이행실태의 확인·점검)

권익위원회는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의 이행실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다.

제53조(공표)

권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공표가 제한되거나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표명의 내용
2. 제50조제1항에 따른 처리결과
3. 제50조제2항에 따른 권고내용의 불이행사유

제54조(권익위원회 상호간의 관계)

- ① 위원회 또는 각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상호 독립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상호 협의 또는 지원을 요청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5장 부패행위 등의 신고 및 신고자 등 보호

제55조(부패행위의 신고)

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제56조(공직자의 부패행위 신고의무)

공직자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른 공직자가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수사기관·감사원 또는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57조(신고자의 성실의무)

제55조 및 제56조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이하 이 장에서 “신고”라 한다)를 한 자(이하 이 장에서 “신고자”라 한다)가 신고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개정 2019. 4. 16.>

제57조의2(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고자 보호 및 불이익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4. 16.]

제58조(신고의 방법)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본인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써 하여야 하며, 신고대상과 부패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16.>

제59조(신고의 처리)

- ① 위원회는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의 경위 및 취지 등 신고내용의 특징에 필요한 사항
 2. 신고내용이 제2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한 사항
-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범위에서 신고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하여 감사·수사 또는 조사가 필요한 경우 이를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감독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에 이첩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기관에 이첩하지 아니하고 종결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6.>
 1. 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2.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3. 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명자료 등에 대한 보완 요청을 2회 이상 받고도 위원회가 정하는 보완요청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4. 신고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지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5. 신고의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6.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부패행위에 대한 감사·수사 또는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

7. 그 밖에 부패행위에 대한 감사·수사 또는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④ 위원회에 신고가 접수된 당해 부패행위의 혐의대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고위공직자로서 부패혐의의 내용이 형사처벌을 위한 수사 및 공소제기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명의로 검찰, 수사처, 경찰 등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21., 2019. 4. 16., 2020. 12. 29.>
1. 차관급 이상의 공직자
 2.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
 3.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공무원
 4. 법관 및 검사
 5. 장성급(將星級) 장교
 6. 국회의원
- ⑤ 제4항에 따라 고발한 경우 관할 수사기관은 수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회가 고발한 사건이 이미 수사 중이거나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사건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12. 29.>
- ⑥ 위원회는 접수된 신고사항을 그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른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보완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6.>
- ⑦ 위원회는 국가기밀이 포함된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신설 2019. 4. 16.>

제60조(조사결과와 처리)

- ① 조사기관은 신고를 이첩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수사 또는 조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 그 연장사유 및 연장기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제59조에 따라 신고를 이첩받은 조사기관(조사기관이 이첩받은 신고사항에 대하여 다른 조사기관에 이첩·재이첩, 감사요구, 송치, 수사의뢰 또는 고발을 한 경우에는 이를 받은 조사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감사·수사 또는 조사결과를 감사·수사 또는 조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통보를 받은 즉시 신고자에게 감사·수사 또는 조사결과와 요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0.>
- 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사기관에 대하여 제2항의 통보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구

할 수 있다.

- ④ 위원회는 조사기관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가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수사 또는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증거자료의 제출 등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 조사기관에 대하여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제2항 후단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신고자는 위원회에 대하여 감사·수사 또는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⑤ 재조사를 요구받은 조사기관은 재조사를 종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통보를 받은 즉시 신고자에게 재조사 결과의 요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61조(재정신청)

- ① 제59조제4항에 따른 혐의대상자의 부패혐의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와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되어 위원회가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한 경우, 그 고발한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 이미 수사 중에 있거나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경우에는 그 사건 또는 그 사건과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위원회가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위원회는 그 검사 소속의 고등검찰청에 대응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6., 2020. 12. 29.>
-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6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61조, 제262조, 제262조의4, 제264조 및 제264조의2를 적용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에 관하여는 검사가 당해 범죄의 공소시효 만료일전 10일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는 그 때, 제59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가 수사의뢰한 때에는 수사의뢰한 날부터 3개월까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개월이 경과한 때 각각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61조의2(이의신청)

제59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가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한 경우, 위원회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해당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위원회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에 따라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12. 29.]

제62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 ① 누구든지 신고자에게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자료 제출 등(이하 “신고등”이라 한다)을 한 이 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누구든지 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자에게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9. 4. 16.]

제62조의2(신분보장 등의 조치 신청 등)

- ① 신고자는 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았거나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해당 불이익조치에 대한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신분보장등조치”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신분보장등조치는 불이익조치가 있었던 날(불이익조치가 계속된 경우에는 그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자가 천재지변, 전쟁, 사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1년 이내에 신분보장등조치를 신청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국외에서의 신분보장등조치 신청은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신분보장등조치의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이 경우 신분보장등조치를 신청한 사람(이하 “신분보장신청인”이라 한다)과 그가 소속된 기관·단체·기업 등의 장 또는 관계 기관·단체·기업 등의 장(이하 “소속기관장등”이라 한다)에게 각각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 제2항에 따른 신청기간이 지나 신청한 경우
 2. 신고자 또는 「행정절차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대리인이 아닌 사람이 신청한 경우
 3. 각하결정, 제62조의3제1항에 따른 신분보장등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결정,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분보장등조치의 권고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신분보장등조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받은 동일한 불이익조치에 대하여 다시 신청한 경우
 4. 다른 법령에 따른 구제절차에 의하여 이미 구제를 받은 경우
 5. 제59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신분보장등조치 신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로서 신분보장등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제3항에 따라 각하결정된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청취하거나 진술서·자료의 제출, 사실·정보의 조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회로부터 이러한 요구를 받은 자는 성실히 따라야 한다.
 1. 신분보장신청인
 2. 불이익조치를 한 자
 3. 참고인
 4. 관계 기관·단체·기업 등

⑤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소속기관장등에게 충분한 소명(疏明)기회를 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9. 4. 16.]

[종전 제62조의2는 제62조의5로 이동 <2019. 4. 16.>]

제62조의3(신분보장 등의 조치 결정 등)

① 위원회는 조사 결과 신분보장신청인이 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제2조제7호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는 제외한다)를 받았거나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등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신분보장 등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결정(이하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이라 한다)을 하여야 하며, 소속기관장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원상회복 조치

2. 차별 지급되거나 체불(滯拂)된 보수 등(이자를 포함한다)의 지급. 이 경우 보수 등의 지급기준 및 산정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불이익조치에 대한 취소 또는 금지

4. 전보, 그 밖에 필요한 조치

② 위원회는 조사 결과 신분보장신청인이 신고등을 이유로 제2조제7호아목 또는 자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받았거나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등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인가·허가 또는 계약의 효력 유지 등 필요한 신분보장등조치를 할 것을 권고(이하 “신분보장등조치권고”라 한다)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조사 결과 신분보장신청인이 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지 않았거나 받을 것으로 예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분보장등조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하 “기각결정”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한 자의 징계권자에게 그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⑤ 공직자인 신분보장신청인이 위원회에 전직, 전출·전입 및 파견근무 등의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 위원회는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인사혁신처장 등 인사조치 요청과 관계된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사혁신처장 등 관계 기관의 장은 위원회로부터 받은 요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신분보장등조치결정, 신분보장등조치권고 또는 기각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신분보장신청인과 소속기관장등에게 각각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4. 16.]

제62조의4(행정소송의 제기 등)

- ① 소속기관장등은 신분보장등조치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② 소속기관장등은 신분보장등조치결정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9. 4. 16.]

제62조의5(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정지)

-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이를 방지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신분보장등조치 신청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릴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고 인정되면 신분보장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4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소속기관장등에게 불이익조치 절차의 잠정적인 중지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6.>
 1. 신고로 인하여 신분보장신청인에 대한 불이익조치 절차가 예정되어 있거나 이미 진행 중인 경우
 2. 신고로 인하여 신분보장신청인에 대한 불이익조치가 행하여졌고 추가적인 불이익조치 절차가 예정되어 있거나 이미 진행 중인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소속기관장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9. 4. 16.>

[본조신설 2016. 3. 29.]

[제목개정 2019. 4. 16.]

[제62조의2에서 이동 <2019. 4. 16.>]

제62조의6(이행강제금)

- ① 위원회는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을 받은 후 그 정해진 기한까지 신분보장등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절차 등에 관하여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1조의2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호조치결정”은 “신분보장등조치결정”으로, “보호조치”는 “신분보장등조치”로, “불이익조치를 한 자”는 “소속기관장등”으로 본다.
- ③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징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4. 16.]

제63조(불이익 추정)

신고자가 신고한 뒤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신분보장등조치를 신청하거나 법원에 원상회복 등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해당 신고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2019. 4. 16.>

제63조의2(화해의 권고 등)

① 위원회는 신분보장등조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분보장등조치결정, 신분보장등조치권고 또는 기각결정을 하기 전까지 직권으로 또는 관계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신분보장등조치 등에 대하여 화해를 권고하거나 화해안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화해 권고나 화해안에 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거나 이 법의 목적을 위반하는 조건을 붙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화해안의 작성, 화해조서의 작성 및 효력 등에 관하여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9. 4. 16.]

제64조(신고자의 비밀보장)

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신고자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에 따른 신고자가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이 공개 또는 보도되었을 때에는 그 경위를 확인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경위를 확인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사람의 징계권자에게 그 사람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 10. 31.]

제64조의2(신변보호조치)

① 신고자는 신고를 한 이유로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경찰청장, 관할

시·도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 ② 제1항에 따른 신변보호조치를 요구받은 경찰청장, 관할 시·도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신변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2.>
- ③ 신고자가 신고를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 신고와 관련한 조사 및 형사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인적 사항의 기재 생략) 및 제9조(신원관리카드의 열람)부터 제12조(소송진행의 협의 등)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7. 10. 31.]

제65조(협조자 보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증언,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에 조력한 자의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 등에 관하여는 제62조, 제62조의2부터 제62조의6까지, 제63조, 제63조의2, 제64조, 제64조의2, 제66조 및 제66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17. 10. 31., 2019. 4. 16.>

제66조(책임의 감면 등)

- ① 신고등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6.>
- ② 공공기관의 징계처분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9. 4. 16.>
- ③ 신고등의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다른 법령,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관련 규정에 불구하고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 4. 16.>

제66조의2(협조의 요청)

위원회는 신고에 대한 조사·처리 또는 신분보장등조치에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상담소 또는 의료기관, 그 밖의 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그 밖의 단체 등은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4. 16.]

제67조(준용규정)

제57조, 제58조, 제62조, 제62조의2부터 제62조의6까지, 제63조, 제63조의2, 제64조, 제64조

의2, 제65조, 제66조 및 제66조의2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16. 3. 29., 2017. 10. 31., 2019. 4. 16.>

1. 피신고자가 소속된 공공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경우
2. 피신고자의 소속기관·단체 또는 기업 등을 지도·감독하는 공공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경우
3.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신고한 경우
4. 부패행위 또는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하여 국회 또는 법원에서 증언하거나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한 경우

제68조(포상 및 보상 등)

- ① 위원회는 위원회 또는 공공기관에 부패행위 신고를 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상훈법」 등의 규정에 따라 포상을 추천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에 부패행위 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이 포상 추천 또는 포상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19. 4. 16.>
- ② 신고자는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6.>
- ③ 신고자 및 제65조에 따른 협조자,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신고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었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위원회에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9. 4. 16.>
 1. 육체적·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
 2. 전직·파견근무 등으로 소요된 이사비용
 3. 원상회복 관련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
 4.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
 5. 그 밖에 중대한 경제적 손해(제2조제7호아목 및 자목에 따른 손해는 제외한다)
- ④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보상금 또는 제3항에 따른 구조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69조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또는 구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직자가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6.>
- ⑤ 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은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에 관한 법

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3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그 법률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보상금 지급신청을 할 수 없다. <개정 2019. 4. 16.>

- ⑥ 제3항에 따른 구조금 지급과 관련된 조사 등에 관하여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익신고자등”은 “신고자 및 협조자”로 본다. <신설 2019. 4. 16.>
[제목개정 2019. 4. 16.]

제69조(보상심의위원회)

- ① 위원회는 제68조에 따른 포상금·보상금·구조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상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9. 4. 16.>
- ② 보상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9. 4. 16.>
 1. 포상금·보상금·구조금의 지급요건에 관한 사항
 2. 포상금·보상금·구조금의 지급액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포상금·보상금·구조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 ③ 보상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19. 4. 16.>
- ④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며, 그 밖의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다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거나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신설 2019. 4. 16.>
 1. 위원회 소속으로 국장급 직위에 있는 공무원 중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2. 부패방지 및 보상금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있는 법률·회계·감정평가, 그 밖의 관련 분야 전문가 및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5명
- ⑤ 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9. 4. 16.>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4. 16.>

제70조(보상금의 지급결정 등)

- ① 위원회는 제68조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일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결정이 있을 때에는 즉시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0조의2(보상금 등의 상환 및 반환)

- ① 위원회는 제68조제4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공공기관(제2조제1호가목 중 「정부조직법」에 따른 각급 행정기관, 같은 호 다목에 따른 기관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3개월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위원회에 상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환을 요구받은 공공기관은 해당 금액을 위원회에 상환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 보상금 또는 구조금을 지급받은 자에게 반환할 금액을 통지하여야 하며, 이를 지급받은 자는 해당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 또는 구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제71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보상금 또는 구조금이 지급된 경우
 3. 그 밖에 보상금 또는 구조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 ③ 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상환 또는 반환하여야 할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해당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4. 16.]

제71조(보상금 등의 중복 지급 금지 등)

- ① 이 법에 따라 보상금 또는 구조금을 지급받을 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 또는 구조금 등을 청구하는 것이 금지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4. 16.>
- ② 제68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보상금 또는 구조금(이하 이 항에서 “위원회보상금 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에 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포상금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 또는 구조금 등을 받은 경우, 그 포상금, 보상금 또는 구조금 등의 액수가 위원회보상금등의 액수 이상인 경우에는 위원회보상금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그 포상금, 보상금 또는 구조금 등의 액수가 위원회보상금등의 액수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위원회보상금등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16.>
- ③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 또는 구조금 등을 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에 의하여 이 법에 따른 포상금·보상금·구조금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그 액수를 공제하고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 또는 구조금 등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16.>

[제목개정 2019. 4. 16.]

제6장 국민감사청구

제72조(감사청구권)

- ① 19세 이상의 국민은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연서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감사원의 사무에 대하여는 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또는 감사원장(이하 “당해 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감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7.>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감사청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국가의 기밀 및 안전보장에 관한 사항
 2. 수사·재판 및 형집행(보안처분·보안관찰처분·보호처분·보호관찰처분·보호감호처분·치료감호처분·사회봉사명령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3. 사적인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4.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중인 사항. 다만, 다른 기관에서 감사한 사항이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사항이 감사에서 누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그 밖에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에 대한 감사청구는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른다.

제73조(감사청구의 방법)

감사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구인의 인적사항과 감사청구의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74조(감사실시의 결정)

- ① 제72조제1항 본문에 따라 감사청구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에서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② 제7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당해 기관의 장이 감사청구를 접수한 때에는 그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③ 감사원 또는 당해 기관의 장은 감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기각하고, 기각을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감사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5조(감사청구에 의한 감사)

- ① 감사원 또는 당해 기관의 장은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② 감사원 또는 당해 기관의 장은 감사가 종결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감사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6조(운영)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국민감사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장 보칙

제77조(제도개선에 대한 제안 등)

- ① 위원회는 고충민원 및 부패방지 업무의 처리과정에서 불합리한 제도를 발견하거나 그 밖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 또는 국회에 그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10.>
- ②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고충민원 및 부패방지 업무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법률 또는 조례가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률 또는 조례의 개정 또는 폐지 등에 관한 의견을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10.>

제78조(고충민원사무의 정보보호)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와 관계 행정기관등은 고충민원과 관련된 정보의 유출로 인하여 신청인과 이해관계인의 이익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9조(고충민원 신청사항의 게시 등)

- ①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와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은 고충민원의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게시하거나 편람을 비치하는 등 가능한 모든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고충민원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자

료의 확인 또는 관계 행정기관등과의 협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를 담당직원이 직접 행하도록 하는 등 신청인의 편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0조(관계 행정기관등과의 협조)

- ①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81조(교육과 홍보 등)

- ①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권리를 인지하고 권리의 침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할 수 있다.
- ②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학교에서 고충민원의 처리와 권리구제 및 부패방지에 관한 내용이 교육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 ③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공무원의 교육훈련과정에 고충민원 제도 및 부패방지에 관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제81조의2(공직자 부패방지교육)

- ① 공공기관의 장은 부패방지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부패방지교육 실시 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다음 각 호의 평가에 반영하도록 해당 기관·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1.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와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3. 「지방공기업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4. 「초·중등교육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시·도교육청평가
-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방법, 결과 제출 및 제2항에 따른 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3. 29.]

제81조의3(국민권의 향상에 관한 포상)

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의 권익 보호·향상에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를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4. 16.]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 3. 29.>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신설 2016. 3. 29.>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
 - 가.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같은 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및 같은 법 제89조의6제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
 - 나. 「공인회계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
 - 다. 「세무사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
 - 라.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 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가목에 따른 시장형 공기업
 - 바. 안전 감독 업무, 인·허가 규제 업무 또는 조달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
 - 사.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과 학교법인이 설립·경영하는 사립학교. 다만, 취업심사대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원으로 취업하는 경우 해당 학교법인 또는 학교는 제외한다.
 - 아.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개설한 같은 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 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취업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 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취업제한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조언·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봉급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취업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6. 3. 29.>

④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제3항, 제5항 및 제8항은 제2항제3호에 따른 퇴직 전 소속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등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6. 3. 29.>

[제목개정 2016. 3. 29.]

제82조의2(자료 제출 요구)

위원회는 제82조에 따른 취업제한의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범죄경력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해당 공공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16. 3. 29.]

제83조(취업자의 해임요구)

① 위원회는 제82조제2항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취업한 자가 있는 경우 당해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하여야 하며, 해임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9.>

② 위원회는 제82조제2항에 위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영리사기업체 등 또는 협회에 취업한 자가 있는 경우 관계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취업자에 대한 취업해제조치의 강구를 요구하여야 하며, 요구를 받은 관계공공기관의 장은 그 취업자가 취업하고 있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영리사기업체 등 또는 협회의 장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임요구를 받은 부패행위 관련 기관, 영리사기업체 등 또는 협회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9.>

제83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①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제22조에 따른 전문위원 및 제25조에 따른 파견 직원은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② 제69조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보상심의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본조신설 2019. 4. 16.]

제84조(국회 등의 특례)

국회 · 법원 · 헌법재판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감사원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당해 기관의 부패방지를 위하여 자체적으로 제12조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를 성실히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9.>

제8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 ①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행정심판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른다.
- ②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 국회규칙 · 대법원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감사원규칙으로 정한다.

제8장 벌칙

제86조(업무상 비밀이용의 죄)

- ① 공직자가 제7조의2를 위반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 1. 7., 2014. 5. 28.>
- ② 제1항의 경우 징역과 벌금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죄를 범한 자 또는 그 정을 아는 제3자가 제1항의 죄로 인하여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은 이를 몰수 또는 추징한다.

제87조(업무상 비밀누설죄)

제30조에 위반하여 부패방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0. 31.>

제88조(인적사항 공개 등 금지 위반의 죄)

제64조제1항(제65조 및 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0. 31., 2019. 4. 16., 2019. 12. 10.>

제89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위반의 죄)

제82조제1항의 비위면직자 등이 같은 조 제2항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3. 29.>

[제목개정 2016. 3. 29.]

제90조(불이익조치 및 신분보장등조치결정 불이행의 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2조제1항(제65조 및 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제2조제7호가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2. 제62조의3제1항(제65조 및 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2조제1항(제65조 및 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제2조제7호나목부터 사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2. 제62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등을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

③ 제62조의5(제65조 및 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잠정적인 중지 조치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 12. 10.>

[전문개정 2019. 4. 16.]

제91조(과태료)

① 제62조의2제4항(제65조 및 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출석, 진술서·자료의 제출, 사실·정보의 조회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 4. 16.>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제8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구를 거부한 취업제한기관의 장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9. 4. 16.>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 3. 29., 2019. 4. 16.>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42조에 따른 업무수행을 방해 ·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고의로 지연시킨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82조의2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한 공공기관의 장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가 부과 · 징수한다. <개정 2019. 4. 16.>

부칙 <제17806호, 2020. 12. 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04

국가인권위원회법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 2020. 8. 5.] [법률 제16928호, 2020. 2. 4., 타법개정]

제1장 총칙 <개정 2011. 5. 19.>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여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5. 19.]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2. 3., 2020. 2. 4.>

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구금·보호시설”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 가.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 보호감호소, 치료감호시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 나. 경찰서 유치장 및 사법경찰관리가 직무 수행을 위하여 사람을 조사하고 유치(留置)하거나 수용하는 데에 사용하는 시설
 - 다. 군 교도소(지소·미결수용실을 포함한다)
 - 라. 외국인 보호소
 - 마. 다수인 보호시설(많은 사람을 보호하고 수용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3.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

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하 “차별행위”라 한다)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 외의 금품 지급, 자금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한다)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나. 재화·용역·교통수단·상업시설·토지·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다.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이나 그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라. 성희롱[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를 말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행위

4. “장애”란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요인으로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상태를 말한다.

5. “시민사회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한 비영리민간단체,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설립허가를 받은 공익법인, 그 밖에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 5. 19.]

제3조(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과 독립성)

① 이 법에서 정하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전문개정 2011. 5. 19.]

제4조(적용범위)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의 영역에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1. 5. 19.]

제2장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5조(위원회의 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11명의 인권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16. 2. 3.>
 1. 국회가 선출하는 4명(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다)
 2. 대통령이 지명하는 4명(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다)
 3.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
 - ③ 위원은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16. 2. 3.>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인권 분야 비영리 민간단체·법인·국제기구에서 근무하는 등 인권 관련 활동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사회적 신망이 높은 사람으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 ④ 국회, 대통령 또는 대법원장은 다양한 사회계층으로부터 후보를 추천받거나 의견을 들은 후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관련된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을 선출·지명하여야 한다. <신설 2016. 2. 3.>
 - 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2. 3. 21., 2016. 2. 3.>
 - ⑥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정무직공무원으로 임명한다. <개정 2016. 2. 3.>
 - ⑦ 위원은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3.>
 - ⑧ 임기가 끝난 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 2. 3.>
- [전문개정 2011. 5. 19.]

제6조(위원장의 직무)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위원장은 국회에 출석하여 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국회에서 요구하면 출석하여 보고하거나 답변하여야 한다.
- ④ 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소관 사무에 관하여 국무총리에게 의안(이 법의 시행에 관한 대통령령안을 포함한다)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예산 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 「국가재정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 5. 19.]

제7조(위원장 및 위원 임기)

- ①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 ② 위원 중 결원이 생기면 대통령은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 ③ 결원이 된 위원의 후임으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 시작된다.

[전문개정 2011. 5. 19.]

제8조(위원의 신분 보장)

위원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이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극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전체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로 퇴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2. 3.>

[전문개정 2011. 5. 19.]

제8조의2(위원의 책임 면제)

위원은 위원회나 제12조에 따른 상임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의결에 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없으면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6. 2. 3.]

제9조(위원의 결격사유)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당연히 퇴직한다.
[전문개정 2011. 5. 19.]

제10조(위원의 겸직금지)

- ① 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을 겸하거나 업무를 할 수 없다.
1.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의 직
 2. 다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교육공무원은 제외한다)의 직
 3. 그 밖에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직 또는 업무
- ②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1. 5. 19.]

제11조 삭제 <2005. 7. 29.>

제12조(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

- ① 위원회는 그 업무 중 일부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와 침해구제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등의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② 상임위원회는 위원장과 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소위원회는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에는 심의 사항을 연구·검토하기 위하여 성·장애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④ 상임위원회, 소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업무 및 운영과 전문위원의 자격·임기 및 위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5. 19.]

제13조(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

-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3명 이상의 출석과 3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11. 5. 19.]

제14조(의사의 공개)

위원회의 의사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 상임위원회 또는 소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5. 19.]

제15조(자문기구)

- ① 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② 자문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5. 19.]

제16조(사무처)

-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 사무총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두되 사무총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소속 직원 중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6급 이하 공무원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 사무총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전문개정 2011. 5. 19.]

제17조(징계위원회의 설치)

- ① 위원회에 위원회 직원의 징계처분을 의결할 징계위원회를 둔다.
② 징계위원회의 구성, 권한, 심의 절차, 징계의 종류 및 효력, 그 밖에 징계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5. 19.]

제18조(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 ①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2. 3.>

②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6. 2. 3.>

[전문개정 2011. 5. 19.]

제3장 위원회의 업무와 권한

제19조(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권에 관한 법령(입법과정 중에 있는 법령안을 포함한다) · 제도 · 정책 · 관행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2.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3.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4.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 조사
5.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6. 인권침해의 유형, 판단 기준 및 그 예방 조치 등에 관한 지침의 제시 및 권고
7. 국제인권조약 가입 및 그 조약의 이행에 관한 연구와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8. 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 및 개인과의 협력
9. 인권과 관련된 국제기구 및 외국 인권기구와의 교류 · 협력
10. 그 밖에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1. 5. 19.]

제20조(관계기관등과의 협의)

- ① 관계 국가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 미리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사(公私) 단체(이하 “관계기관등”이라 한다)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5. 19.]

제21조(정부보고서 작성 시 위원회 의견 청취)

국제인권규약에 따라 관계 국가행정기관이 정부보고서를 작성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 5. 19.]

제22조(자료제출 및 사실 조회)

- ①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기관등에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이나 사실 조회를 요구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거나 전문적 지식 또는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그 진술을 들을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기관은 지체 없이 협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5. 19.]

제23조(청문회)

- ①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기관등의 대표자, 이해관계인 또는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등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사실 또는 의견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실시하는 청문회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5. 19.]

제24조(시설의 방문조사)

- ① 위원회(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의결로써 구금·보호시설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방문조사를 하는 위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직원 및 전문가를 동반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을 지정하여 소속 직원 및 전문가에게 조사를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를 위임받은 전문가가 그 사항에 대하여 조사를 할 때에는 소속 직원을 동반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방문조사를 하는 위원, 소속 직원 또는 전문가(이하 이 조에서 “위원등”이라 한다)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방문 및 조사를 받는 구금·보호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은 즉시 방문과 조사에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④ 제2항에 따라 방문조사를 하는 위원등은 구금·보호시설의 직원 및 구금·보호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이하 “시설수용자”라 한다)과 면담할 수 있고 구술 또는 서면으로 사실이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 ⑤ 구금·보호시설의 직원은 위원등이 시설수용자를 면담하는 장소에 참석할 수 있다. 다만, 대화 내용을 녹음하거나 녹취하지 못한다.
- ⑥ 구금·보호시설에 대한 방문조사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5. 19.]

제25조(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 권고)

- ① 위원회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기관등에 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관계기관등의 장은 그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관계기관등의 장은 권고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권고사항의 이행계획을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21.>
- ④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관계기관등의 장은 그 권고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2. 3. 21.>
- 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권고와 의견 표명 및 제4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관계기관등의 장이 통지한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2. 3. 21.>
[전문개정 2011. 5. 19.]

제26조(인권교육과 홍보)

- ① 위원회는 모든 사람의 인권 의식을 깨우치고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인권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학교 교육과정에서 인권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키기 위하여 교육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 ③ 위원회는 인권교육과 인권에 관한 연구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설립된 학교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 ④ 위원회는 공무원의 채용시험, 승진시험, 연수 및 교육훈련 과정에 인권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키기 위하여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 ⑤ 위원회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18조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또는 연구회의 장과 협의하여 인권에 관한 연구를 요청하거나 공동으로 연구할 수 있다.
- ⑥ 위원회는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장에 대하여 그 교육내용에 인권

관련 사항을 포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5. 19.]

제27조(인권도서관)

① 위원회는 인권도서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2. 3. 21.>

② 인권도서관은 인권에 관한 국내외의 정보와 자료 등을 수집·정리·보존하여 일반인이 이용하도록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2. 3. 21.>

③ 삭제 <2012. 3. 21.>

④ 인권도서관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 3. 21.>

[전문개정 2011. 5. 19.]

[제목개정 2012. 3. 21.]

제28조(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대한 의견 제출)

① 위원회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판이 계속(係屬) 중인 경우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의 담당 재판부 또는 헌법재판소에 법률상의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4장에 따라 위원회가 조사하거나 처리한 내용에 관하여 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 위원회는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의 담당 재판부 또는 헌법재판소에 사실상 및 법률상의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5. 19.]

제29조(보고서 작성 등)

① 위원회는 해마다 전년도에 활동 내용과 인권 상황 및 개선 대책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고 외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과 국회에 특별보고를 할 수 있다.

③ 관계기관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에 관한 의견, 조치 결과 또는 조치 계획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 개인의 명예 또는 사생활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5. 19.]

제4장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의 조사와 구제 <개정 2005. 7. 29.>

제30조(위원회의 조사대상)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이하 “피해자”라 한다)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5. 19., 2012. 3. 21.>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또는 구금·보호시설의 업무 수행(국회의 입법 및 법원·헌법재판소의 재판은 제외한다)과 관련하여 「대한민국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서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2. 법인, 단체 또는 사인(私人)으로부터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 ② 삭제 <2005. 7. 29.>
- ③ 위원회는 제1항의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1. 5. 19.>
- ④ 제1항에 따른 진정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 5. 19.>

제31조(시설수용자의 진정권 보장)

- ① 시설수용자가 위원회에 진정하려고 하면 그 시설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직원(이하 “소속공무원등”이라 한다)은 그 사람에게 즉시 진정서 작성에 필요한 시간과 장소 및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② 시설수용자가 위원 또는 위원회 소속 직원 앞에서 진정하기를 원하는 경우 소속공무원등은 즉시 그 뜻을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소속공무원등은 제1항에 따라 시설수용자가 작성한 진정서를 즉시 위원회에 보내고 위원회로부터 접수증명원을 받아 이를 진정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2항의 통지에 대한 위원회의 확인서 및 면담일정서는 발급받는 즉시 진정을 원하는 시설수용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 ④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경우 또는 시설수용자가 진정을 원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위원회는 위원 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구금·보호시설을 방문하게 하여 진정을 원하는 시설수용자로부터 구술 또는 서면으로 진정을 접수하게 하여야 한다. 이때 진정을 접수한 위원 또는 소속 직원은 즉시 접수증명원을 작성하여 진정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른 위원 또는 소속 직원의 구금·보호시설의 방문 및 진정의 접수에 관하여는 제24

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 ⑥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진정한(진정을 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과 위원 또는 위원회 소속 직원의 면담에는 구금·보호시설의 직원이 참여하거나 그 내용을 듣거나 녹취하지 못한다. 다만, 보이는 거리에서 시설수용자를 감시할 수 있다.
- ⑦ 소속공무원등은 시설수용자가 위원회에 제출할 목적으로 작성한 진정서 또는 서면을 열람할 수 없다.
- ⑧ 시설수용자의 자유로운 진정서 작성과 제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구금·보호시설에서 이행하여야 할 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5. 19.]

제32조(진정의 각하 등)

- ① 위원회는 접수한 진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진정을 각하(却下)한다.
 - 1. 진정의 내용이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 2. 진정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한 진정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 4.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나서 진정한 경우. 다만,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공소시효 또는 민사상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사건으로서 위원회가 조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5. 진정이 제기될 당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다만, 수사기관이 인지하여 수사 중인 「형법」 제123조부터 제125조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사건과 같은 사안에 대하여 위원회에 진정이 접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6. 진정이 익명이나 가명으로 제출된 경우
 - 7. 진정이 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8. 진정인이 진정을 취하한 경우
 - 9. 위원회가 기각한 진정과 같은 사실에 대하여 다시 진정한 경우
 - 10. 진정의 취지가 그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한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경우
-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진정을 각하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진정을 관계 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 이 경우 진정을 이송받은 기관은 위원회의 요청이 있으면 지체 없이 그 처리 결과

를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가 진정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후에도 그 진정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진정을 각하할 수 있다.
- ④ 위원회는 진정을 각하하거나 이송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진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⑤ 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진정인에게 통지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해자 또는 진정인에게 권리를 구제받는 데에 필요한 절차와 조치에 관하여 조언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5. 19.]

제33조(다른 구제 절차와 이송)

- ① 진정의 내용이 다른 법률에서 정한 권리구제 절차에 따라 권한을 가진 국가기관에 제출하려는 것이 명백한 경우 위원회는 지체 없이 그 진정을 그 국가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가 제30조제1항에 따라 진정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후에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과 같은 사안에 관한 수사가 피해자의 진정 또는 고소에 의하여 시작된 경우에는 그 진정을 관할 수사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진정을 이송한 경우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진정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송받은 기관은 위원회가 요청하는 경우 그 진정에 대한 처리 결과를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5. 19.]

제34조(수사기관과 위원회의 협조)

- ①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 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 인멸 등을 방지하거나 증거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위원회는 검찰총장 또는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수사의 개시와 필요한 조치를 의뢰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의뢰를 받은 검찰총장 또는 관할 수사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조치 결과를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5. 19.]

제35조(조사 목적의 한계)

- ① 위원회는 조사를 할 때에는 국가기관의 기능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訴追)에 부

당하게 관여할 목적으로 조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 5. 19.]

제36조(조사의 방법)

-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방법으로 진정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
 1. 진정인·피해자·피진정인(이하 “당사자”라 한다) 또는 관계인에 대한 출석 요구, 진술 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 요구
 2.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3.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한 현장조사 또는 감정(鑑定)
 4.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의 조회
- ② 위원회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 또는 소속 직원에게 일정한 장소 또는 시설을 방문하여 장소,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하여 현장조사 또는 감정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그 장소 또는 시설에 당사자나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진술서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14일 이내에 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피진정인에 대한 출석 요구는 인권침해행위나 차별행위를 한 행위당사자의 진술서만으로는 사안을 판단하기 어렵고, 제30조제1항에 따른 인권침해행위나 차별행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 ⑤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위원 또는 소속 직원은 그 장소 또는 시설을 관리하는 장 또는 직원에게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⑥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위원 또는 소속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그 장소 또는 시설을 관리하는 장 또는 직원에게 내보여야 한다.
- ⑦ 위원회가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자료, 물건 또는 시설에 대한 현장조사 또는 감정을 하려고 하는 경우 관계 국가기관의 장은 그 자료, 물건 또는 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위원회에 소명하고 그 자료나 물건의 제출 또는 그 자료, 물건, 시설에 대한 현장조사 또는 감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관계 국가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사항의 확인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관계 국가기관의 장은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1.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외교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기밀 사항인 경우
 2. 범죄 수사나 계속 중인 재판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11. 5. 19.]

제37조(질문·검사권)

- ① 위원회는 제36조의 조사에 필요한 자료 등이 있는 곳 또는 관계인에 관하여 파악하려면 그 내용을 알고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게 질문하거나 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서류와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36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 [전문개정 2011. 5. 19.]

제38조(위원의 제척 등)

- ① 위원(제41조에 따른 조정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정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그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진정의 당사자이거나 그 진정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진정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진정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진정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진정에 관하여 수사, 재판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 절차에 관여하였던 경우
 -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당사자의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다만, 위원장이 결정하기에 타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진정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1. 5. 19.]

제39조(진정의 기각)

- ① 위원회는 진정을 조사한 결과 진정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진정을 기각한다.
 1. 진정의 내용이 사실이 아님이 명백하거나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2. 조사 결과 제30조제1항에 따른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이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별도의 구제 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위원회는 진정을 기각하는 경우 진정의 당사자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1. 5. 19.]

제40조(합의의 권고)

위원회는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진정에 대하여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구제 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5. 19.]

제41조(조정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 ① 조정의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성·장애 등의 분야별로 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조정위원회의 위원(이하 “조정위원”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위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장애 등의 분야별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또는 민간단체에서 인권과 관련된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판사·검사·군법무관·변호사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대학 또는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 ③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위원회의 위원인 조정위원 중 회의마다 위원장이 지명하는 1명
 2. 제2항에 따른 분야별 조정위원 중 회의마다 위원장이 지명하는 2명
- ④ 조정위원의 위촉 및 임기, 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조정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 ⑤ 조정위원회의 조정 절차에 관하여 이 법 및 위원회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사조정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 5. 19.]

제42조(조정위원회의 조정)

- ① 조정위원회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와 관련하여 당사자의 신청이나 위원회의 직권으로 조정위원회에 회부된 진정에 대하여 조정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 ② 조정은 조정 절차가 시작된 이후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을 조정서에 적은 후 당사자가 기명날인하고 조정위원회가 이를 확인함으로써 성립한다.
- ③ 조정위원회는 조정 절차 중에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 ④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포함시킬 수 있다.

1. 조사대상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의 중지
 2. 원상회복, 손해배상, 그 밖에 필요한 구제조치
 3. 동일하거나 유사한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 ⑤ 조정위원회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결정서를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⑥ 당사자가 제5항에 따라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조정을 수락한 것으로 본다.
- [전문개정 2011. 5. 19.]

제43조(조정위원회의 조정의 효력)

제42조제2항에 따른 조정과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

[전문개정 2011. 5. 19.]

제44조(구제조치 등의 권고)

- ① 위원회가 진정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일어났다고 판단할 때에는 피진정인, 그 소속 기관·단체 또는 감독기관(이하 “소속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6. 2. 3.>
 1. 제42조제4항 각 호에서 정하는 구제조치의 이행
 2.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
 - ②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소속기관등의 장에 관하여는 제2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12. 3. 21.>
- [전문개정 2011. 5. 19.]

제45조(고발 및 징계권고)

- ① 위원회는 진정을 조사한 결과 진정의 내용이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 형사 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검찰총장에게 그 내용을 고발할 수 있다. 다만, 피고발인이 군인이나 군무원인 경우에는 소속 군 참모총장 또는 국방부장관에게 고발할 수 있다.
- ② 위원회가 진정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면 피진정인 또는 인권침해에 책임이 있는 사람을 징계할 것을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라 고발을 받은 검찰총장, 군 참모총장 또는 국방부장관은 고발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치지 못할 때에는 그 사유를 밝혀야 한다.

- ④ 제2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권고를 받은 소속기관등의 장은 권고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5. 19.]

제46조(의견진술의 기회 부여)

- ① 위원회는 제44조 또는 제45조에 따른 권고 또는 조치를 하기 전에 피진정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② 제1항의 경우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 위원회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5. 19.]

제47조(피해자를 위한 법률구조 요청)

- ① 위원회는 진정에 관한 위원회의 조사, 증거의 확보 또는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해자를 위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그 밖의 기관에 법률구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법률구조 요청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
- ③ 제1항에 따른 법률구조 요청의 절차·내용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5. 19.]

제48조(긴급구제 조치의 권고)

- ① 위원회는 진정을 접수한 후 조사대상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진정에 대한 결정 이전에 진정인이나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피진정인, 그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의료, 급식, 의복 등의 제공
2. 장소, 시설, 자료 등에 대한 현장조사 및 감정 또는 다른 기관이 하는 검증 및 감정에 대한 참여
3. 시설수용자의 구금 또는 수용 장소의 변경
4.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의 중지

5.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공무원 등을 그 직무에서 배제하는 조치

6. 그 밖에 피해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 또는 관계인 등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명예의 보호, 증거의 확보 또는 증거 인멸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관계인 및 그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그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5. 19.]

제49조(조사와 조정 등의 비공개)

위원회의 진정에 대한 조사·조정 및 심의는 비공개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공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5. 19.]

제50조(처리 결과 등의 공개)

위원회는 이 장에 따른 진정의 조사 및 조정의 내용과 처리 결과, 관계기관등에 대한 권고와 관계기관등이 한 조치 등을 공표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공표가 제한되거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 5. 19.]

제5장 보칙 <개정 2011. 5. 19.>

제51조(자격 사칭의 금지)

누구든지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 5. 19.]

제52조(비밀누설의 금지)

위원, 조정위원, 자문위원 또는 직원이거나 그 직에 재직하였던 사람 및 위원회에 파견되거나 위원회의 위촉에 의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 5. 19.]

제53조(유사명칭 사용의 금지)

위원회가 아닌 자는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1. 5. 19.]

제54조(공무원 등의 파견)

- ① 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기관등의 장에게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등의 장은 위원회와 협의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을 위원회에 파견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은 그 소속 기관으로부터 독립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다.
- ④ 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공무원 또는 직원을 파견한 관계기관등의 장은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하여 인사 및 처우 등에서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 5. 19.]

제55조(불이익 금지와 지원)

- 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위원회에 진정, 진술, 증언, 자료 등의 제출 또는 답변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해고, 전보, 징계, 부당한 대우,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 ② 위원회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의 진상을 밝히거나 증거 또는 자료 등을 발견하거나 제출한 사람에 필요한 지원 또는 보상을 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지원 또는 보상의 내용,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5. 19.]

제6장 벌칙 <개정 2011. 5. 19.>

제56조(인권옹호 업무방해)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는 위원 또는 직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
 2. 위원 또는 직원에게 그 업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저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

행하거나 협박한 사람

3. 위계(僞計)로써 위원 또는 직원의 업무 수행을 방해한 사람

4. 이 법 제4장에 따라 위원회의 조사 대상이 되는 다른 사람의 인권침해나 차별행위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사람

② 친족이 본인을 위하여 제1항제4호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 5. 19.]

제57조(진정서 작성 등의 방해)

제31조를 위반하여 진정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방해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3. 18.>

[전문개정 2011. 5. 19.]

제58조(자격 사칭)

제51조를 위반하여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1. 5. 19.]

제59조(비밀누설)

제52조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3. 18.>

[전문개정 2011. 5. 19.]

제60조(긴급구제 조치 방해)

제4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하는 조치를 방해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1. 5. 19.]

제61조(비밀침해)

제31조제6항 또는 제7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침해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3. 18.>
[전문개정 2011. 5. 19.]

제62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 5. 19.]

제63조(과태료)

-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정당한 이유없이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문조사 또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실지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정당한 이유없이 제3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진술서 제출요구 또는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3. 정당한 이유없이 제36조제1항제2호 및 제4호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 등의 제출요구 및 사실조회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 등을 제출한 자
- ② 제53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20. 3. 24.>
- ④ 삭제 <2020. 3. 24.>
- ⑤ 삭제 <2020. 3. 24.>
- ⑥ 삭제 <2020. 3. 24.>

부칙 <제17126호, 2020. 3. 2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05

고충민원신청서 서식

고충민원신청서			
대구광역시 복지옴부즈만 / 인권옴부즈만 귀하 주 소 : 성 명 : 전화번호 :			년 월 일
대구광역시 복지 및 인권옴부즈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충 민원을 신청합니다.			
신청의 취지			
신청의 사유			
원인이 된 사실이 있었던 일시		년 월 일	
기타의 제도에 의한 구제절차 진행유무	☐ 유(☐시민상담 ☐이의신청 ☐진정 ☐청원 ☐행정심판 ☐행정소송 ☐국민권익위원회) ☐ 무		
대 리 인	주 소: 성 명: 전화번호 :	신 청 인 과 의 관 계	(접수인)

**2021년도
복지 및 인권옴부즈만
운영보고서**

발 행 일	2021년 12월
인 쇄 일	2021년 12월
발 행 처	대구광역시 복지 및 인권옴부즈만
주 소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산격동) 101동 1층
전 화	053-803-6233
홈 페이지	http://www.daegu.go.kr/Ombudsman

이 보고서는 「대구광역시 복지 및 인권옴부즈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23조 (운영상황 제출)의 규정에 따라 2021년도 활동실적을 대구광역시장과 시의회에 제출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2021년도

복지 및 인권옴부즈만
운영보고서